<최종보고 자료>

인정제도 경쟁력 제고방안

2015. 8.

산업연구원

목차

Ⅰ. 연구배경과 목적 ····· 2

1. 연구 배경 ····· 2
2. 연구 목적 ····· 4

Ⅱ. 인정제도 개념 ····· 5

1. 인정과 인정제도의 개념 ····· 5
   (1) 적합성 평가 및 인정의 개념 ····· 5
   (2) 인정의 편익과 효과 ····· 10
   (3) 인정과 지정 ····· 13
2. 단일인정제도와 복수인정제도 비교 분석 ····· 17
   (1) 인정제도 일반 ····· 17
   (2) 인정제도와 이해당사자 관계 ····· 20
   (3) 정책적 시사점 ····· 23

Ⅲ. 국제 인정기구 및 주요국의 인정제도 현황 ····· 42

1. 국제 인정기구 현황 ····· 24
2. 주요국의 인정제도 현황 ····· 27
   (1) EU ····· 29
   (2) 독일 ····· 33
   (3) 일본 ····· 37
   (4) 홍콩 ····· 41
   (5) 중국 ····· 44
   (6) 영국 ····· 45
   (6) 미국 ····· 56

Ⅳ. 인정제도 현황 ····· 57

1. 개관 ····· 57
2. 인정시장의 현황 및 전망 ····· 58
3. 국내 인정/지정제도 운영 현황 ····· 60

(1) 인정기구 ····· 60
(2) 지정제도 ····· 63
(3) 인정기구와 타 부처의 지정제도 관계(타 부처 지정제도의 국표원 인정기구 수용 현황 중심) ····· 64
(4) 인정기구 개편 동향 ····· 68
4. 인정제도의 경쟁력 분석 ····· 71
5. 인정제도의 과제 ····· 79
(1) 인정업무 중복문제 해소 ····· 79
(2) 인정기구의 경쟁력 강화 ····· 80

Ⅴ. 국내 인정제도 경쟁력 강화 방안 ····· 82

1. 개관 ····· 82
2. 국내 인정제도 경쟁력 강화방안 ····· 83
(1) 단기적 개선방안 ····· 83
(2) 중장기 개선방안 ····· 84

부표 ····· 85

Ⅰ.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 국가 품질인프라 최정점에 있는 인정제도 중요성 증대

○ 인정(Accreditation)은 국제기준(ISO)에 따라 제3자(인정기구)가 적합성 평가기관(시험인증기관 등)의 조직,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적격성을 평가하여 적합성 평기기관의 공신력을 보증하는 행위임.

- 인정은 적합성 평가기관이 특정 적합성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격하다는 사실을 제3자가 공식적인 증명 발행 등을 통해 실증하는 행위임.

-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제 19항에서는 "적합성 평가"란 제품, 서비스, 공정, 체제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인정은 적합성 평가 활동 유형 중 하나로 적합성 평가기관의 적격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적합성 평가시스템 최상단에서 적합성 평가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점이 특징임.

○ 이처럼 인정은 한 국가 품질 인프라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며, 시장의 신뢰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선순환 고리의 최정점에 있음.

- 품질 인프라는 표준화, 계량, 적합성 평가, 인정제도로 구성되고 궁극적으로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의 일부로 기능함.

□ 인정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정제도 개편 필요

○ 국가별 인정제도와 관련하여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단일인정제도, 즉 단일인정기구를 채택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 할 수 있음.

- ILAC과 IAF 가입 국가 전체 81개국 74개국이 단일인정기구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일인정제도 채택이라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복수인정제도, 즉 복수인정기구 채택하고 있음.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992년 이후 인정 영역별로 국제인정기구 활동에 대응하여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이하 KOLAS), 한국제품인정기구(Korea Accreditation System, 이하 KAS), 한국인정원(Korea Accreditation Board, 이하 KAB)을 설립하여 운영 중임.

○ 복수인정기구 운영은 대내적으로는 적합성 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나 소규모 인정기구의 운영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 곤란, 인정기구의 운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국내 3개 인정기구가 대외적으로 전문성 및 국제대응능력, 국제 지명도(브랜드) 등에서 취약한 것도 복수인정기구 운영에 따른 운영기구별 규모의 영세성 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함.

- 3개 인정기구의 경우 주요 선진국의 인정기구는 물론, 중국이나 일부 동남아국가 등과 같은 후발개도국에 비해서도 규모가 영세하고 인정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단일인정기구 위상 설정과 효율적 운영 마련 필요

○ 3개 인정기구를 관할하고 있는 국표원은 기존 3개 인정기구를 단계적으로 단일인정기구로 통합하는 인정제도 개편을 추진 중임.

- 구체적으로 민간의 전문인력이 지원하는 통합인정기구 체제로 개편을 추진 중임.

○ 국표원의 기존 인정기구의 통합 외에 범부처 차원에서도 새로운 단일인정기구 도입과 이러한 인정기구와 지정제도의 관계 설정을 중심으로 인정기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임.

○ 기존 인정기구를 단일인정기구로 통합할 경우 내부적으로는 설립근거가 되는 인정기구 관련 법령 개정 등과 함께 통합(단일) 인정기구 운영 효율성이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와 함께 단일인정기구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정제도를 포함한 국가 전체 적합성 평가시스템에서 단일인정기구의 위상 설정, 특히 단일인정기구와 부처별 지정제도 관계 설정 등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운영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인정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무역의 촉진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지원임.

○ 따라서 이러한 단일인정기구도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인정기구 자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인정제도 개편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인정기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Ⅱ. 인정제도 개념

1. 인정과 인정제도의 개념

(1) 적합성 평가 및 인정의 개념

○ 적합성 평가는 제품(서비스 포함),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또는 기관과 관련된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됨을 실증하는 것임[1].

- 적합성 평가는 시험, 인증, 검사, 검증, 교정 등으로 구성됨.

○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제 19항에서는 "적합성 평가"란 제품, 서비스, 공정, 체제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적합성 평가는 크게 요구사항 정의, 적합성 평가활동, 인정으로 구성됨.

<표> 적합성 평가의 3가지 구성요소

구분	내용
요구사항 정의	- 표준이나 기준 설정 등
적합성 평가	- 제품, 서비스, 시스템, 인력이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활동 - 적합성 평가는 제조업체, 고객, 제3자 평가기관이 수행
인정	- 적합성 평가기관이 평가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인정(Accreditation)은 국제기준(ISO/IEC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인정기구)[2]가 적합성 평가기관의 조직,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적격성을 평가하여 적합성 평가기관[3]의 공신력을 보증하는 행위임.

---

1) KS Q ISO IEC 17000 (적합성평가-용어 및 일반원칙) 2.1

2) 제3자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관 모두 가능하나 실제로는 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이나 국제인정기구(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의 정회원으로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된 기구임.

3) 적합성 평가기관은 시험, 인증, 검증기관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각 업무영역은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예를 들어 인증기관의 경우 자체적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예: KC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증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예: KS인

– 인정은 적합성 평가기관이 특정 적합성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격하다는 사실을 제3자가 공식적 증명 발행 등을 통해 실증하는 행위임[4].

○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제18항은 인정에 대해 “인정기구가 시험검사기관을 평가하여 능력을 보증하는 것”으로 규정함.

– 인정기구는 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이하 ILAC)나 국제인정포험(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이하 IAF) 등과 같은 국제인정기구의 정회원으로 이들 국제인정기구와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된 기구임[5]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제18항>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시험·검사기관 인정"이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특정한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험·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이처럼 인정은 제품(서비스 포함) 및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 대해 시장의 객관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역량과 공정함에 대한 외부적 공신력을 제공하는 행위임.

– 인정기구에 의한 적합성 평가기관의 공신력 보증은 이들 기관의 시험과 인증 결과의 공신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정제도는 한 국가 시험인증제도의 기초를 형성함.

○ 인정은 적합성 평가기관의 적격성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와 보증을 한다는 점과 이러한 심사평가와 보증을 통해 적합성 평가시스템 최상단에서 적합성 평가 서비스의 질을 보증한다는 점이 특징임.

- 적합성 평가의 결과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적합성 평가시스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표준협회 등)도 있음.

4) KS Q ISO IEC 17000 (적합성평가–용어 및 일반원칙) 5.6

5) 이에 해당하는 국내 기구는 현재 3개(KOLAS, KAS, KAB)인데, 국가표준법은 이들 인정기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음.

- 인정은 적합성 평가기관의 전문성과 적합성 등 적격성에 대한 검사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이들 기관 적합성 평가의 품질을 보장하고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기여함.

○ 인정도 적합성 평가활동 유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인정기구도 광의의 적합성 평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인정은 적합성 평가기관을 심사평가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용어 사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정기구와 적합성 평가기관을 구분하여 사용함.

– 독일도 인정기구와 적합성 평가기관을 구분하고, '적합성 평가기관'을 시험(교정 포함)이나 검사, 인증[6]을 수행하도록 인정(지정)받은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인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적격성 평가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국제적 표준에 기반한 국제적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짐.

- 이는 국가간 적합성 평가결과가 동일할 경우 적합성 평가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의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쌓이게 되고, 상호 인정의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통된 표준에 의해 적합성 평가기관이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인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적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적합 평가의 곤원칙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제적 통용성 "One Standard, One Test, Accepted Everywhere"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을 통해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임.

○ 구체적으로 전체 적합성 평가시스템에서 인정은 ISO/IEC 17011의 규정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각 적합성 평가 분야별 ISO/IEC 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짐.

- 적합성 평가분야는 <그림 Ⅱ-1> 과 같이 9개 분야로 구성되고, 각 분야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적격성 평가는 해당 분야 ISO/IEC 규정을 따름.

- 각 적합성 평가분야에 대한 인정대상은 시험기관, 검사기관, 제품인증기관, 경영시스템 인증기관, 검증기관 등 20여개 분야임(국표원 자료).

<그림 Ⅱ-1> 적합성 평가시스템 내에서 인정시스템 구성

자료: 최금호(2013), 국제무역의 평가인증 핸드북

(2) 인정의 편익과 효과

○ 한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기업의 생산 프로세스 개선, 국내외 규제 준수 확인, 기술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들의 체계를 통칭하여 품질인프라라 부름.

- 품질인프라는 표준화, 계량, 인정 제도, 적합성 평가로 구성되고 국가 혁신과 제품·서비스의 생산, 분배, 무역의 효율성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의 일부로 기능함.

○ 인정은 적합성평가 기관의 평가를 통해 구가 전체 품질인프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무역과 가치사슬 상에서 시간과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가져옴[7].

– 인정은 품질인프라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며, 시장의 신뢰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선순환 고리의 최정점에 있음.

<그림 Ⅱ-2> 품질인프라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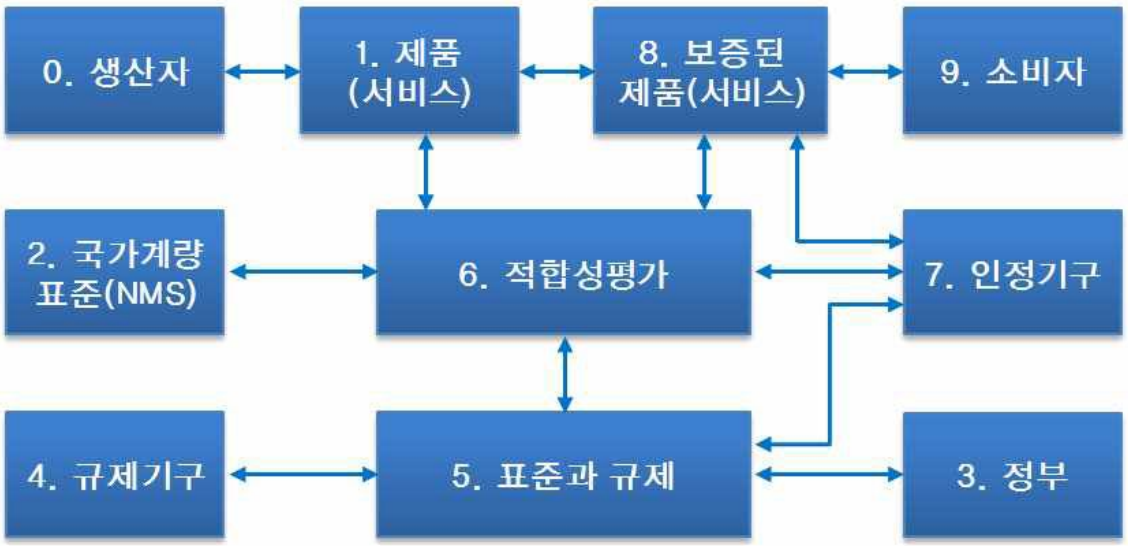

자료: 영국 BIS, The Economics of Accreditation

<표 Ⅱ-1> 품질인프라 구성과 효과

품질인프라 구성	활동	주요 기능	수혜자	주요 영향력
표준화(Standardization)	표준 구성(준수 선택), 기술 규제 (준수 의무)	– 지식 교류 – 협력 – 제품과 절차 조화	– 기업 – 소비자	– 규모의 경제 – 학습의 경제 – 혁신 – 기술분산 – 경쟁 – 가격하락 – 소비자와 환경보호
계량	측정 절차 구	– 추적가능	– 기업	– R&D 효율화

7) Jorge Gonçalves, Jan Peuchert, Measuring the Impact of Quality Infrastructure, 2011.4.

(Metrology)	축 및 측정도구의 교정	- 비교가능 - 불확실성 감소	- 산업계 - 정부 - 소비자	- 해외시장 접근 - 국제가치사슬 통합 - 안정적 정부 지출 - 소비자 보호
적합성평가 (Conformity Assessment)	관리 절차, 표준과 제품(서비스)의 적합성	- 적합성 - 확신 - 신뢰성	- 기업 - 소비자	- 정보 불균형 감소 - 혁신 프리미엄
인정 (Accreditation)	조직이나 사람의 특정업무 수행 역량에 대한 공적 확인	- 역량 - 추적가능 - 투명성 - 독립성	- 품질인프라 전체	- 세계시장과 - 가치사슬의 경제적 통합 - 품질서비스의 우수사례 전파

자료: Jorge Gonçalves, Jan Peuchert, Measuring the Impact of Quality Infrastructure, 2011.4.

○ 신뢰는 시장거래는 물론 공공서비스 제공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 인정의 경우 이러한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

○ 인정의 효과를 정부와 기업으로 구분하여 보면, 정부에 대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안전하고 환경문제 등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자주 규제 형태로 나타나는데, 최근 규제활동에서 적합성 평가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인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특히, 인정은 정부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규제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서 공공서비스 비용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함.

- 또한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인정의 활용은 입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고 공공서비스 활동의 신뢰성을 강화해줌.

- 이밖에 중복 규제 문제를 피하고, 개방적, 효율적, 그리고 투명한 정부활동에 기여함.

○ 기업에 대해서는 표준에 대응하여 효율적 그리고 비용 효과적으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

- 기업들은 제품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또는 규제 때문에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적합성 평가는 시장의 신뢰도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성공에 기여함.

- 또한 수출기업 등에 대해서는 시장 접근성을 제공함. 특히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한 수출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재검사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함으로써 시장 접근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옴.

○ 인정기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자료는 매우 드문 실정인데, 최근 영국의 UKAS 인정을 받은 적합성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2년 7월 조사자료[8]에 따르면 인정받은 적합성 평가기관이 인정으로부터 얻은 편익은 마케팅/평판(51%), 서비스 품질 제고(19%), 소비자 요구(16%)순으로 나타남.

<그림 Ⅱ-3> 인정의 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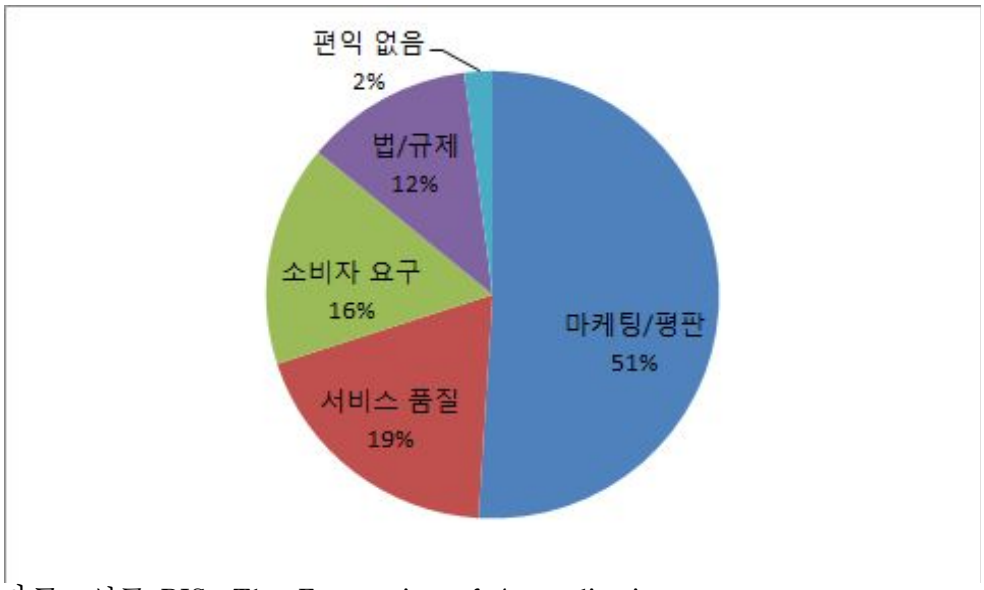

자료: 영국 BIS, The Economics of Accreditation

○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 적합성 평기기관의 서비스 가격 변화는 분야별로 평균 6~11% 수준의 가격상승률을 보임.

- 세부 분야별로는 교정 분야의 가격상승이 평균 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0% 이상의 가격상승 응답률이 65%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을

8) 9개 문항의 웹서베이가 진행되었으며, 총 176개 기관에서 응답함.

보임.

- 이에 비해 가장 낮은 시험 분야는 평균 6%로 10% 이상의 가격상승 응답률도 33%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표 Ⅱ-2> 인정받은 후 적합성 평가기관의 서비스 가격 변화

단위: %

	시험	교정	검사	인증
가격 상승(10% 이상)	33	65	43	54
가격 상승(10% 미만)	15	25	16	19
가격 변동 없음	49	8	37	24
가격 하락(10% 미만)	1	1	4	4
가격 하락(10% 이상)	2	1	0	0
가격상승률 평균	6	11	7	8

자료: 영국 BIS, The Economics of Accreditation

○ 인정받은 적합성 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전체 서비스의 45% 정도가 UKAS 인정을 받은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구매 측면보다는 판매 측면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세부 분야별로는 구매 측면에서는 교정 서비스의 점유율이 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판매 측면에서는 시험 서비스의 점유율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Ⅱ-3> 인정받은 적합성 평가서비스 시장 점유율

단위: %

		전체	시험	교정	검사	인증
인정받은 서비스	구매율	40	47	59	20	36
	판매율	51	62	40	29	43
점유율 평균		45	50	50	25	40

자료: 영국 BIS, The Economics of Accreditation

주: IAF의 별도 데이터에 따르면 인정받은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증서 발행률은 전체의 88% 수준으로, 본 자료의 인정받은 인증서비스 구매율 36%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품질경영표준에 대한 자기인증(Self-certifying)과 인정받은 적합성 평가기관에서 인정마크가 없는 인증서를 발행하는 비중 때문으로 추정됨.

○ 인정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 인정을 받은 후 가격상승, 매출성장, 파생사업을 통한 부가가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서비스 가격상승 3,090 억원, 매출성장 1,162 억원, 파생사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5,312억원 등 전체 약 9,564 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영국 UKAS 연간 매출액 361억원의 26.5 배에 이르는 효과임.

(3) 인정과 지정

○ 인정과 유사한 행위로 정부 부처의 지정제도(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지정행위(Designation)가 존재함.

○ 우리나라는 ISO 국제표준에 따른 인정제도 외에 2015년 8월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기관에 대해 시험인증권한을 부여하는 전체 209개 지정제도를 운영 중임.

- 예 : 선박안전법에 따라 해수부가 한국선급을 선박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선박검사를 운영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기자제 인증의 경우 인증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이 시험기관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해 시험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이들 지정제도의 지정행위는 관련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해 법령에 따라 공신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KOLAS 등 인정기구의 인정행위과 외견상 유사해 보임.

- 지정제도도 정부 부처가 법률적 또는 비법률적 규제활동과 관련하여 적합성 평가 활동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해 적격성을 평가하여 관련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최근 들어 정부의 규제적 활동에서 시험, 검사, 인증 등 적합성 평가틀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인정기구와 정부 부처의 지정활동간 또는 지정받은 기관과 이들 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위임받은 기관들간 관계에서 다소 혼선이 발생함.

○ 그러나 정부 부처의 지정행위는 국제적인 표준에 기반하여 적합성 평가기관의 적격성을 인정한 인정행위와 달리 국제적 기준이 아닌 국내 법규 등에 기반하여 적합성 평가기관들에 대해 적격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다름.

- 실제 내용에서는 인정은 ISO 국제표준에 따라 제3자가 운영하는 반면, 지정행위는 중앙 행정기관이 법적 규제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 법령에 따라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 예를 들어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시험기관의 경우 국제 시험기관 인정 표준에 따라 시험자격에 대해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국내 개별 법령에 의해 자격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함.

<표 Ⅳ-8> 인정과 지정제도 비교

구분	인정(Accreditation)	지정(Designation)
근거	- 국제 표준(ISO/IEC) : ISO/IEC 17025(시험기관 요건), ISO 14065(GHG 검증기관 요건)	- 국내 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90여개 법령
특징	- 임의 제도(제3자가 평가)	- 강제 제도(규제 당국이 평가)
목적	- 국제 동등성, 공신력(국제 통용)	-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목적 달성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국표원)	- 각 중앙행정기관(개별법)

○ 이처럼 인정은 ISO/IEC 규정 등 국제적인 기준에 기반한 국제적 상호인정 시스템에 의거하여 인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법령에 기반한 규제적 활동인 지정과 가장 큰 차이점임.

- 인정은 국제적 통용성 확보가 목적이고 따라서 그 적용 범위가 해외시장까지가 영향이 미치는 범위라면, 지정은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 법령에 따른 것으로 그 적용 범위가 국내 지역에 한정됨.

○ 따라서 인정기구의 인정행위와 정부 부처의 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Ⅳ-3> 국내 인정기구와 지정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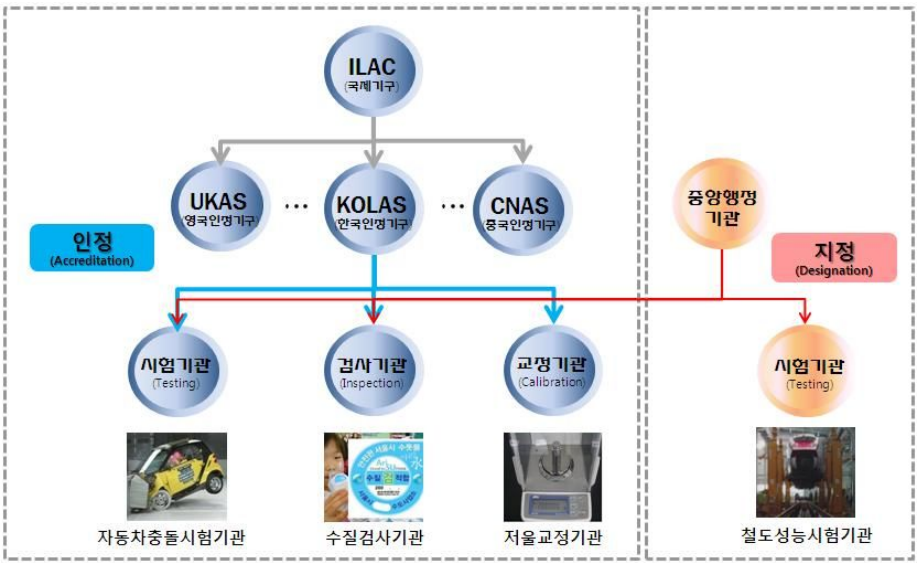

○ 인정기구와 지정제도의 관계는 지정제도에 참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들이 국제인정기구의 요구사항에 부합할 경우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지정제도에 참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들이 특정 분야에서의 적격성과 관련하여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 정부부처의 선택적인 행위임.

- 이는 특정국가가 단일인정제도와 복수인정제도 중 어떠한 인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음.

- 특정 적합성 평가기관이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하여 지정제도 하에서 정부 부처로부터 지정을 받아 적합성 평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적합성 평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에 근거하여 해당 정부 부처로부터 지정을 받아야함.

- 반대로 특정 지정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로부터 적합성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하여 이들 기관이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이는 동일한 적합성 평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인정을 받은 적격성과 지정을 받은 적격성간 적격성을 부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임.

(4) 국가별 인정기구와 지정제도 관계 사례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에서도 정부 관련 부처나 산하기관이 규제 또는 비규제 활동을 담당할 기관의 지정과 승인은 책임지고 있음.

○ 최근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규제활동에서 일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제도에서 적합성 평가시스템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지정제도 운용에서 인정기구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대체로 지정제도의 경우 부처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정받은 기관의 역량은 물론 지정절차 등에서 격차, 제도 운용에서의 일관성과 투명성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인정제도가 가지는 절차의 일관성이나 투명성 등과 같은 장점을 규제활동에서 활용하려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지정제도 운용에서 인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국제적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정절차 등을 채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국가에서 강제적(의무적)인 사항이라기 보다는 선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또는 정부 부처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임.

○ 해외국가 정부기관들이 지정제도 운용에서 인정을 수용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함.

□ 스위스

○ 스위스의 경우 적합성 평가기관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절차인 인정이 지정제도 운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규정한 기술 무역 장벽에 관한 법률(Law on Technical Trade Obstacles (Gesetz űber technische

Handelshemmnisse, 이하 THG)의 제18조는 인정을 부처의 적합성 기관들의 적격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적합성 평가기관의 적격성 평가시 인정과 다른 방식의 사용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THG 관련 보고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러한 다른 기법 도입은 국제적 관점에서 균형이 맞지 않아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스위스의 인정 및 지정에 관한 법령(Akkreditierungs – und Bezeichnungsverordnung, 이하 AkkBV)[9]의 지침 및 특정 분야별 법령은 국가 인정기구에 의한 인정을 받은 기관은 특정 분야의 다른 전문 기관의 별도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특정 적합성 평기기관에 대해 인정기구 SAS로부터의 인정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적격성과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스위스 인정기구인 SAS를 통해 모두 이루어지게 됨.

- 실제로 제3국가와의 MRA 체제 하에서 기관에 대한 지정은 대체로 SAS에 의한 인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 규제 분야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특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특정분야 기관이 인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는 인정법(Akkreditierungsgesetz, 이하 AkkG) 및 특정 분야별 법령은 적합성 평가기관의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정 분야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이나 승인에 대한 규정은 오스트리아 인정법의 인정을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 분야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연방경제부에서 인정한 기관 및 인정법에 의해 인정받은 기관은 법에 따라 모두 기계, 장치, 기기를 아우르는 분야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짐.

– 의료기기분야에서의 지정에 가장 먼저 필요한 사항은 기관이 인정법이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연방경제부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요약하면 법규에 따라 기관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며, 적어도 AkkG에 의거하여 그에 합당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

○ 프랑스 국가 인정기구인 COFRAC의 인정은 항상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개별 법령에서 인정이 요구되는지 여부는 관련 부처나 관련 특별법에서 결정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부처의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시 인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EU의 규정을 수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별 부처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동일 부처 내에서도 서로 다른 경우가 존재함.

- 예를 들어 지정 관련 법규에서 인정을 전혀 거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COFRAC의 인정을 규정한 경우도 존재함.

□ 영국

○ 영국 BIS(당시 DTI)와 대다수의 정부 부처들은 적합성 평가기관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단일인정기구 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이하 UKAS)를 설립함.

○ 지정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BSI와 다른 부처들은 UKAS와 협력을 통해 규제 분야에서의 지침을 만듦.

○ EN 45000 표준에 따른 UKAS의 인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모

든 부처가 산하 적합성 평가기관의 적격성 평가에 있어 UKAS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부처가 이 기관을 지정할 경우 UKAS는 해당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조사 이후 지정여부에 대해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네델란드

○ 네덜란드 정부는 협정을 통해 네덜란드 인정기구 RvA와 상호 권리와 의무 등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 협정은 향후 정부 부처의 승인이나 지정이 RvA의 인정이나 평가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협정은 인정을 EU나 국제적 표준에 근거하여 RvA가 시행하는 검사로 간주하고, 평가를 관련 부처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RvA가 시행하는 검사라고 생각하고 있음.

○ RvA의 검사보고서는 관련 부처가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승인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2003년 내각에서 결정된 향후 적합성 평가에 대한 지침은 관련 선택사항에 따라 인정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RvA에서 인정받은 적합성 평가기관이 발행한 평가에 대해서만 법적인 이점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 부처가 지정과 승인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RvA의 보고서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님.

□ 스웨덴

○ 스웨덴에서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적격성 평가는 항상 스웨덴 국가인정기구 SWEDAC를 통해서만 이루어짐.

○ SWEDAC은 국가기관으로써 정부 부처 지정기관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수행하고, 정부는 이를 참고하여 기관 지정 여부를 판정하지만, 정부로부터 지정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반드시 SWEDAC 인정이 필요한 것은 아님.

○ 만약 이미 SWEDAC 인정을 받은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은 이미 지정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고 간주됨.

- 인정을 받지 않은 지정기관의 경우 SWEDAC로부터 적합한 절차에 따라 적격성을 평가받을 수 있음.

2. 단일인정제도와 복수인정제도 비교 분석

(1) 인정제도 일반

○ 단일인정제도와 복수인정제도 어느 인정제도가 우월한가에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인정기구의 역량에 따라 결정됨.

- 인정기구의 역량은 이들 기구로 인정을 받은 적합성 평가기관의 공신력 또는 경쟁력 관리 역량이라고 할 수 있음.

○ 인정제도와 관련하여 단일인정제도와 복수인정제도 찬반 문제는 인정기구간 경쟁이 인정의 품질이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인정에 대한 신뢰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이 있음.

□ 단일인정제도

○ 복수인정제도, 즉 인정기구간 경쟁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쟁이 인정 비용만 더 비싸게 하고 품질은 떨어뜨릴 뿐, 인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임.

- 경쟁은 인정기구의 고객에 대한 독립성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신뢰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음.

○ 또한 인정제도의 경우 투명성이 전체 시스템에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데, 복수인정기구 활동으로 인해 이 투명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됨.

○ 이에 따라 인정기구간 경쟁을 허용하여 복수인정기구가 존재할 경우 인정의 품질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위 감독이나 사후관리 기관 설립 등이 필요하게 됨.

- 근본적으로 인정기구간 경쟁이 인정 품질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와 같은 장점이 있을 경우 이러한 상위 기관 설립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상위 기관 설립은 불필요한 절차가 될 수 있음.

- 상위 인정기구 설립 외에 인정기구별 인정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간 동등성 평가 등의 메커니즘 채택도 고려할 수 있음.

○ 인정기구간 경쟁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쟁으로 인하여 관리의 악순환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임.

- 현행 시스템에서도 국제적인 상호평가 협력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인정기구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비용은 늘어나게 됨.

- 더 나아가 인정기구 수가 증가할수록 인정 표준의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따라서 인정기구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점임.

○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기구간의 경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는 일반적으로 인정기구들이 인정활동을 통해 기껏해야 기구 운영비용만을 충당할 수 있을 뿐 인정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점임.

○ 이 문제는 국가별 인정(시장) 규모와도 관련이 있는데, 인정기구의 해외진출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인정관련 시장 규모가 작을 경우 복수인정기구를 유지할 수 없게 됨.

○ 현재 국제적으로 한 국가당 하나의 인정기구체제가 일반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인정기구간 경쟁이 허용될 경우 동등성 평가 등 국가간 상호인정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임.

- 인정기구간의 경쟁에 대해 ISO/IEC 17011는 물론 EA 등에서는 인정기구의 비영리성을 규정하는 등 유럽에서는 경쟁의 배제, 즉 단일인정기구 채택이 지배적인 분위기임[10].

○ 따라서 국내 인정수요 중 해외기관의 인정수요는 해당 국가 진출과 관련하여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해당 국가에 진출한 해외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수요이기 때문에 국내 인정관련 시장 규모가 작을 경우 단일인정기구가 바람직함.

○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매력이 없는 분야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인정, 즉 인정수요가 높지 않은 분야에 대한 적시 인정도 오히려 단일인정기구가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인정기구의 국제적인 브랜드 측면에서도 단일인정기구가 복수의 인정기구에 비해 유리할 수 있음.

- 특히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의 경우 이러한 측면이 중요할 수 있음.

□ 복수인정제도

○ 복수인정기구, 즉 인정기구간 경쟁을 찬성하는 이유는 전문성 제고나 고객 친밀도 측면에서 경쟁이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인정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임.

○ 그러나 이처럼 인정기구간 경쟁이 비용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인정 품질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하는 추가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복수인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경제적 이득에 기반하여 인정기구들이 활동하고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분야(시장실패분야)에 대해서만 국가기관이 인정을 제공하고 있음.

---

10) EU 회원국의 대다수는 인정기구간 경쟁 대신에 동등성 평가 과정이나 해설서를 중심으로 EA나 EA-MLA같은 네트워크 체계의 품질을 확고히 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2) 국내 인정제도와 이해당사자 관계

○ 인정제도의 일반적인 장단점 외 인정제도와 이해당사자간 관계 측면에서 장단점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정부

○ 정부지원과 관련하여 단일인정기구는 인력, 예산 지원의 집중화가 가능하고 국제기구 연회비 및 4년마다 발생하는 수검비용 등의 절약이 가능함.

– 복수인정기구의 경우 기구별로 국제기구 연회비 및 4년마다 수검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함.

○ 복수인정제도는 부처별 기준 개발 및 유지 관리 등 중복적 투자가 불가피한 반면, 단일인정기구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음.

○ 국제협력 측면에서도 단일인정기구의 경우 전문화된 국제협력팀 운영 등을 통해 4년마다 이루어지는 국제수검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음.

– 이와 함께 단일인정기구는 국제인정기구(ILAC, IAF 등), 지역인정기구(APLAC, PAC 등) 등 해외 인정기구에 대한 일관성 있는 협력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그림 Ⅱ-5> 단일인정기구와 복수인정기구 비교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 인정서비스 전문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복수인정기구는 부처별, 전문영역별로 세분화된 평가기준, 사후관리 방식 등을 적용, 관리함으로써 업무영역별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인정기구간 경쟁을 통해 인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가능함.

- 이에 대해 업무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단일인정기구는 인정대상 기관과의 유착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고, 인정영역은 경쟁영역이 아니고 인정기구간 경쟁은 인정기구간 고객유치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또한 서비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국제인정기구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측면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음.

○ 인정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인 인정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동일한 기준과 방식을 적용하는 단일인정기구가 유리함.

□ **수요자(적합성 평가기관)**

○ 복수 인정기구일 경우, 평가기준 및 사후관리 잣대가 달라 인정관리가 복잡해지므로 통일적인 인정기준과 방식 적용과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단일인정기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대해 민간 경쟁체제의 복수인정기구일 경우,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유리하고, 복수인정기구가 해외인정수요를 흡수할 경우 국제기구에 대한 연회비 및 수검비 등 중복적인 비용발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 국내 적합성 평가기관들의 경우 해외에서의 인지도, 공신력과 통용력 그리고 절차 처리 간편성 등의 측면에서 단일인정제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았음[11].

- 국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일인정기구가 국내 적합성평가기관의

11) 2015년 3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국가인정기구 개편 관련 시험·인증기관 회의 결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에스테크(주), 디티엔씨(주) 참석)

해외 인지도 등을 높이는데 효율적이라는 점에서는 대부분 공감함.

- 일부 복수인정기구간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인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복수인정기구가 존재할 경우 경쟁을 통한 이점보다는 모든 인정기구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반론도 있었음.

□ 기타 시장 주체(국내기업, 해외 바이어, 소비자)

○ 시장 주체의 경우가 단일인정기구의 경우 국가인정마크를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어 단일인정기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표 Ⅱ-4> 이해당사자 관점의 단일·복수 인정기구의 장단점 분석

인정거버넌스 주체 / 장·단점	정 부		민 간	
	단 일	복 수	단 일	복 수
장점	- 제도일관성 확보 - 국가정책연계용이 - 글로벌시장 대응에 규제 부처간 협업적 공동대응 용이 - 국가 단일브랜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시험인증시장 대형화/융합화로 시험인증산업 육성	- 전문성확보 용이	- 국가 단일브랜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제도운영 일관성 - 전문인력 확보 용이 - 시험변화 신속대응 용이	- 분야별 전문성 확보 용이
단점	- 전문성 취약 - 신속대응 미약	- 부처간 중복인정으로 기업부담 증가 - 인정제도간 인정기준 등 상이로 시장 혼란 초래 - 인정 거버넌스 분산으로 글로벌 시장 공동 대응 한계 - 인정기구간 경쟁 유발 가능성 상존	-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 미흡 - 상업적 운영으로 인증비용 상승 우려	- 중복인정으로 기업부담 증가 - 거버넌스 분산으로 글로벌 대응 한계 - 인정제도간 인정기준 상이 등 시장혼란 초래 - 인정기구간 상업적 경쟁증가로 인정품질 저하 우려

자료: 국표원

(3) 정책적 시사점

○ 인정기구는 국가 품질인프라의 최상단에서 국가 품질수준과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자체 작은 수입(매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정제도 채택은 중요한 과제임.

○ 단일인정제도와 복수인정제도는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자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정제도 채택이 중요함.

○ 이와 관련하여 인정제도 채택에는 국제적인 국가 인정 브랜드 구축이나 경쟁력 강화, 적합성 평가기관의 경쟁력 강화, 인정제도를 포함한 국가 적합성 평가시스템의 운영 효율성 제고, 국가 인정시장 규모와 규모의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정제도와 지정제도는 그 목적이나 근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정제도에서 적합성 평가틀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규제활동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에서의 일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제도에서 인정기구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지정제도의 적용 범위가 국내이지만 국제적인 기준에 기반한 인정기구의 인정행위, 즉 적합성 평가기관 평가틀이나 관리방식은 지정기관의 역량 강화나 운영 효율성이나 투명성 제고 그리고 규제활동의 일관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정제도에서 인정기구의 활용은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통한 국제무역 촉진보다는 제도의 운영 효율성이나 투명성 제고, 제도간 일관성 제고 등에 있음.

Ⅲ. 국제 인정기구 및 주요국의 인정제도 현황

1. 국제 인정기구 현황

○ 한 국가의 인정제도는 한 국가의 독자적인 주권 영역이나, 인정기구의 공신력이나 글로벌 경쟁력 등은 이들 기구의 국제인정기구의 기준에 대한 부합도나 국가간 상호인정 정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

○ 각국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의 국가간 상호인정, 즉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ILAC과 IAF라는 양대 국제기구가 활동 중임.

- ILAC은 교정을 포함한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에 대한 인정을 주로 다루는 반면, IAF는 경영시스템, 제품, 서비스, 인력(자격)에 대한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인정기구의 협력체로, 주로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에 관여하고 있음.

- ILAC과 IAF는 활동분야가 다르지만 검사기관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활동 분야가 일부 겹침.

○ ILAC과 IAF는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MLA 또는 MRA)에 합의하는 등 국제인정체제 유지와 관련하여 상호협력하고 있음[12].

○ 이에 따라 양대 기구의 회원기관들은 상대 기구 회원이 발행한 인정을 자체 기구 회원의 인정과 동일하게 받아들임.

- 양대 기구는 상호 인정을 받은 인증서가 사용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받아들여지게끔 노력하고 있음.

○ ILAC과 IAF 가입은 양대 기구의 상호인정을 수용할 경우, 즉 양대 기구의 MLA에 참여(서명)할 경우 가능함.

---

12) 일반적으로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란 용어는 정부간 규제부문에 대하여 체결하는 상호인정협정과 같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협정을 의미할 때 사용되므로, 정부간의 협정과 구별되는 임의 협정(Voluntary Arrangement)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 :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란 용어를 사용함

- MLA 참여는 인정기구가 공통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짐. 예를 들어 ILAC-MRA에 서명한 인정기구는 인정기구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인 ISO/IEC 17011 및 ISO/IEC 17025, ILAC의 해설 지침서를 준수해야 함.

-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할 경우 ILAC의 정회원 자격을 가지며, 정회원 자격 부여 결정은 인정기구에 대한 매 4년마다 이루어지는 동등성 평가(MLA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

○ ILAC이나 IAF와 같은 국제인정기구나 EU의 European Accreditation(이하 EA) 등과 같은 지역인정기구는 적합성 선언의 국제적 상호 인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

- 이들 기구들은 적합성 평가 결과의 상호 인정에 관한 다자간 협정(MLA 또는 MRA) 확립을 위한 포럼을 구성함.

- 이들 또 다른 주요한 기능은 인정기구에 대한 요구사항 및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을 위한 지침을 포함하는 표준에 대한 해설서를 제공하는 것임.

- 이러한 해설서는 표준의 적용을 단일화하고, 적합성 평가기관의 활동 수준을 통일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러한 공통된 표준의 통일된 적용은 궁극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단 한번의 적합성 평가와 인정만으로 모든 곳에서 수용되도록 하는 소위 “One standard-One test-Accepted everywhere”를 목표로 하는 적합성 평가 기본원칙에 기반함.

○ 이들 기구는 동등성 평가 과정을 통해 MLA의 준수 여부가 검증된 인정기구만을 인정하며, 회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는 APLAC*, PAC**, EA 등과 같은 지역 단체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함.

*APLAC : 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PAC :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 동등성 평가는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적합성 평가단계에서 각국 인정기구들은 상호간 승인을 위하여 관련 협의체에 참가하고, 이러한 협정 그룹은 그 회원들에게 표준 및 절차 규칙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상호 평가를 통해 준수성을 감시하게 됨.

- 동등성 평가는 2차 기관에 의한 사후관리가 아니라, 동등한 차원의 기관에 의한 평가라는 점이 특징임.

<표 Ⅲ-1> 국제인정기구 현황

국제기구	ILAC	IAF
설립	1996년	1993년
대상	시험, 검사, 교정 등을 수행하는 시험소(Laboratory) 분야	제품인증, 경영인증, 검증 등을 수행하는 인증 분야
회원국	**66개국(80개 인정기구)**	**49개국(55개 인정기구)**
우리나라 참여	KOLAS(시험교정) - 1996년 * 회원국간 성적서 상호인정(2000년)	KAB(경영인증) - 1996년 KAS(제품인증) - 2001년 * 회원국간 인증서 상호인정(1999년)

주: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한국인정기구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 한국제품인정기구
KAB(**K**orea **A**ccreditation **B**oard) : 한국인정원

○ 양 기구를 통해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MRA는 ILAC/IAF 회원(각국 인정기구)가 4년 주기로 실시되는 회원간 동등성 평가에 통과되면, 회원간 시험성적서, 인증서가 상호 수용되는 체제를 의미함.

- 현재 MRA 대상 분야는 시험, 품질환경·경영 인증 등 10개 분야이며 2017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검증 등 15개 분야까지 확대될 전망임.

○ 각 국은 자국 인정기구를 이들 국제인정기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음(<그림 > 참조).

<그림 Ⅲ-1> 국제인정기구와 국가별 인정기구간 관계

[시험검사 분야 국제체계] [인증분야 국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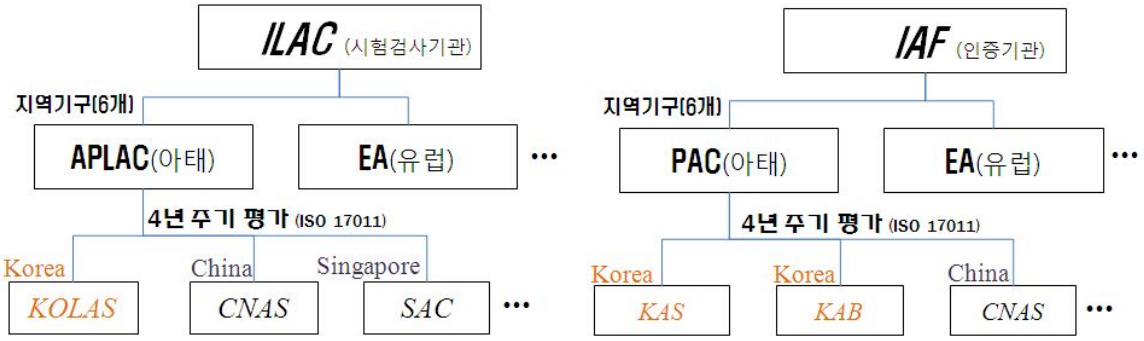

2. 주요국의 인정제도 현황

○ 국가별 인정제도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단일인정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 할 수 있음.

- ILAC, IAF 참여국가(회원국) 전체 81개국 중 74개국이 단일인정제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2> ILAC, IAF 참여국가 인정제도 현황

단위: 개, %

ILAC, IAF 참여 국가		단일인정기구		복수인정기구	
국가수	비중	국가수	비중	국가수	비중
81	100.0	74	91.4	7	8.6

자료: ILAC, IAF

○ EU 회원국, 중국 등 대부분 국가는 단일인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 미국, 일본, 인도 등 7개국은 복수인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단일인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중복인정 방지를 통한 인정 관련 부담경감, 인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공공서비스 개념 강화 등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복수인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인정기구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복수인정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은 대체로 인정대상을 시험기관(ILAC)과 인증기관(IAF)으로 구분하여 인정기구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3〉 복수인정기구 채택 국가의 인정기구 현황

단위 : 개

	ILAC	IAF	개수
캐나다	1) Canadi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Inc. (CALA) 2) Institute for Quality Management in Healthcare (IQMH) 3) 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	1) 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	3
인도	1)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Certification Bodies (NABCB) 2)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Testing & Calibration Laboratories (NABL)	1)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Certification Bodies (NABCB)	2
일본	1) International Accreditation Japan (IAJapan) 2) Japan Accreditation Board(JAB) 3) Voluntary EMC Laboratory Accreditation Center INC(VLAC)	1) JIPDEC 2) Japan Accreditation System for Product Certification Bodies of JIS Mark(JASC) 3) International Accreditation Japan (IAJapan) 4) Japan Accreditation Board(JAB)	5
한국	1)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1) Korea Accreditation System(KAS) 2) Korea Accreditation Board(KAB)	3
태국	1)Bureau of Laboratory Accreditation, Department of Science Service,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BLA-DSS) 2) The Bureau of Laboratory Quality Standards,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Ministry of Public Health, Thailand (BLQS-DMSc) 3)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Council of Thailand - Office of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Council (NSC-ONSC)	1)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Council of Thailand - Office of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Council (NSC-ONSC)	3

미국	1) Accreditation Services Bureau(A-S-B) dba Laboratory Accreditation Burear(L-A-B) 2) 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A2LA) 3) AIHA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s, LLC (AIHA-LAP,LLC) 4) ANSI-ASQ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ANAB) 5) American Society of Crime Lab Directors/Laboratory Accreditation Board (ASCLD/LAB) 6) Inter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Inc (IAS) 7)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NVLAP) 8) Perry Johnson Laboratory Accreditation, Inc (PJLA)	1) 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A2LA) ANSI-ASQ National Accreditation Board(ANAB) 20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3) Inter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Inc(IAS)	8
러시아	1) Association of Analytical Centers 'Analitica' (AAC 'Analitica')	1) Scientific Technical Centre on Industrial Safety (STC-IS)	2

자료: ILAC, IAF

(1) EU

○ EU는 역내 단일시장화를 목표로, 기술장벽 제거를 통한 자유무역 촉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EU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765/2008 등을 통해 1국가 1인정기구를 강제화함.[13)]

<EU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765/2008>

- 인정 및 제품 마케팅 관련 시장감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15) 조에서 '회원국은 하나의 인정기구 유지'를 규정
·19) 조에서 '국가 인정기구들간의 경쟁 방지' 요구(복수 인정 회피)

- EU No. 765 규정 중 인정관련 주요 규정 내용

(10) 비록 아직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규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인정은 모든 회원국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런 활동에 관한 **공통적 규칙의 결여는 유럽공동체 내에서 상이한 접근법과 상이한 제도를 야기**하였으며, **인정 수행에 적용되는 규제 정도가 회원국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왔다.** 따라서 인정에 관한 종합적 체계의 개발 및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원칙 수립이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11) 단일 국가 인정기구의 설립은 어떠한 편견 없이 회원국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13) 2008년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765를 통해 인정 및 제품 마케팅 관련 시장감시에 대한 요구사항 (15)에 **회원국들은 하나 이상의 국가 인정기구를 유지하여서는 안 되며** 그 인정기구는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됨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2010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함.

(15) 인정의 목적이 적합성 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권위있는 선언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회원국들은 하나 이상의 국가 인정기구를 유지하여서는 안 되며,** 그 인정기구는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됨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국가 인정기구들은 상업적 적합성 평가 활동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업무 수행에 있어, 회원국들은 국가 인정기구가 그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합당하다.

(19) 국가 인정기구들 간의 경쟁은 인정기구 활동의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적합성 평가 체계의 최종 관리 기관으로서의 이들의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다. 동 규정의 목적은 유럽연합 내에서 하나의 인정서가 유럽연합의 모든 지역에서 충분히 통용되며, 비용 추가를 야기하는 복수 인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20) **복수 인정을 피하고, 인정서의 수용 및 인정 강화, 인정된 적합성평가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적합성평가기관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회원국의 국가 인정기구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독일

① DAkkS 설립 이전 독일의 인정제도

○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독일의 인정제도는 2009년까지 독일인정협의회(Deutsche Akkreditierungsrat, German Accreditation Council, 이하 DAR)를 중심으로 한 약 20개의 민간과 공공부문 인정기구로 구성된 복수인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음.

- DAR는 1991년에 설립된 정부와 민간기구의 협의체로 <표 Ⅲ-4>와 같은 기구들이 참여하였고, 연방노동부(이하 BAM)이 DAR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함.

- 일부 인정기구간에는 인정 분야의 중복현상도 존재하였고, 2010년 DAkkS 설립 전까지 인정기구간 협력과 조정 역할을 담당함.

- DAR는 연방경제부, 연방노동부 및 독일공업(제품표준)규격연구소(DIN)의 후원을 받았으나, 독자적으로 인정이나 인증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고 독일 내의 시험, 인증기관의 인정 결과에 대한 등록 업무만 수행함.

<표 Ⅲ-4> DAR 참여기구

구분	기관
정부	- 연방경제부(BMWi), 연방노동부(BAM), BDI, BMG 등
민간표준화기관	- DIN 등
공공시험 및 인증기관	- DKD/PTB, BSI 등
민간시험 및 인증기관	- AKS, Hannover, GAZ 등

자료:

② DAKKS로 통합 이전 분야별 인정제도

○ DAKKS로 통합된 전 독일의 인정제도는 법적 규제분야와 비규제분야를 구분하여 하여 운영함.

1) 법적 규제분야의 승인 및 인정기구

○ 법적 규제분야의 인정기구는 크게 **연방정부 차원의 승인 및 인정기구와 주정부(Länder) 차원의 승인 및 인정기구로 구성됨.**

- <표> 외에 연방정부 차원의 인정기구는 연방교통국, 연방철도국, 연방노동국, 그리고 연방고속도로연구소 등이 존재하였고, 주정부 차원에서는 건설 부문과 환경 부문 및 유기농 농업 부문 등에서도 승인과 인정권한을 보유함.

<표 Ⅲ-8> 독일의 DAKKS로 통합 이전 **법적 규제분야의 승인 및 인정기구**

구분		내용
연방정부 차원의 승인 및 인정기구	Federal Network Agency	- EMVG에 따르면, 연방통신청(Federal Network Agency)은 지정인증기관(Notified Body)으로서 통신분야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을 담당
	DAU	- 1995년에 독일산업협회(BDI), 산업통상의회연합(DIHK), ZDH 및 자동차, 화학, 전자, 미네랄 오일, 광학, 의학 및 메카트로닉스와 기계 및 장비 공학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철강건설,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을 포함하는 9개의 지역연합에 의해 설립 - EMAS가 담당하던 환경평가사 허가 및 모니터링 기능은 이곳으로 이관되었으며, 환경관련 인정업무 담당
	BSI	- 연방정보보안국(BSI)는 IT 관련 안전검사결과 인정(인증)업무 담당 - 실제 제품인증 관련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검사활동은 민간 기관에 위임
주정부 (Länder)	ZLS	- 뮌헨에 본부가 있으며, 1989년에 16개 주정부에 설립 - 주요 활동은 예방적인 직업 안전에 관한 것으로 장비 및 기계

의 승인 및 인정기구		검사기관 및 인증기관의 인정 및 사후관리 담당
	ZLG	- ZLG는 본(Bonn)에 본부가 있으며, 1993년 주정부(Länder)간 조약에 의해 설립 - 비활성 의료기기 및 시험관 내 진단에 관한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 및 통보와 같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주정부의 업무 수행
	KL-Mess	- KL-Mess는 교정 분야에서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현재 지침 90/384 EC의 규제 하에 있는 비자동식(non-automatic) 저울분야 인정업무를 담당
	AKS Hannover /SAL	- AKS Hannover/SAL은 Wiesbaden에 소재하고 식품분야에서 인정 활동 수행 - AKS Hannover는 제65회 보건장관회의(Conference of Health Ministers) (1994)의 결의안에 따라 Lower Saxony 주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독일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 - SAL은 SAL과 협력협정을 맺은 7개 주정부(Baden-Württemberg, Bavaria, North-Rhine-Westphalia, Thineland-Palatinate,Saarland, Saxont and Thuringia)에서 지원을 받아 식품분야 인정업무 수행

□ 비규제분야의 승인 및 인정기구

○ DAkkS 출범 이전에 법규에 기반하지 않은 비규제분야에서는 DAP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이 인정업무를 수행함.

- 비규제분야에 대해서는 기업간 거래 촉진과 시장접근 촉진을 위해 주로 민간 인정기구들이 인정서비스를 제공함.

<표 Ⅲ-6> 독일의 비규제분야 인정기구

구분	내용
DAP(Deutches Akkreditierungssystem Prüfwesen GmbH)	- 1988년 연방경제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이 BAM-Akkreditierungssystem Prüfwesen으로 설립하고, 물질시험관리소(Material Testing Offices)의 지원을 받음. - 이후 Deutsche Gesellschaft für Zerstörungsfreie Prüng (DGZfP), DVS-Deutscher Verband für Schweißen und verwandte Verfahren e.V., Lloyd Industrial Services GmbH(GLIS), Landesgewerbeanstalt Bayern(LGA)와 Verband der Technischen Überwachungs-Vereine e.V.(VdTÜV) 등이 파트너로 참여
DACH	- DASMIN와 함께 화학분야 인정기구 - 1992년 말에 VCI, GDCh, DIN에 의해 설립되어 1994년부터 인정활동 시작 - 2003년 이후 DGMK와 DGKL로 합병

DASMIN	- 페트롤륨, 천연가스, 석유화학 및 석탄 정제 등의 품질 제고를 위해 1991년에 GDMK에 의해 설립 - 2006년 1월 1일자로 DACH에 인정 활동을 위임
DATech	- 전기기술, 공학, 정밀기계, 광학, 정보기술 관련 분야에서 인정활동 수행
TGA	- 품질경영시스템 및 환경경영시스템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인정 및 비파괴(non-destructive) 시험, 접합 및 용접 기술, 자동차 전문가, 부식 전문가, 자산 전문가,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시스템 요원 등에 대한 자격인증 수행
GAZ	- 1989년에 독일 기업 연합체에 의해 설립되어 철강산업 분야 인정 수행
DIAS	- 다양한 분야의 검사기관에 대한 인정 수행
DKD	- PTB 분야 인정 수행
DEKITZ	- 정보기술 분야에서 인정활동을 하였으며, 2000년에 DATech와 합병

자료:

○ 이처럼 단수 인정기구로 파편화된 인정제도에 따라 법적 규제분야와 비규제분야에서 활동하는 독일의 적합성 평가기관들은 복수의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밖에 독일에서는 기기 및 제품안전법(Geräte und Produktsicherheitsgesetz)에 따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검사기관(ZÜS)이 시험업무를 수행함.

- 이에 따라 DAR 이외에 독일에서 시험기관을 인정하는 DAP(Deutsche Akkreditierungssystem Prüfwesen)과 DAR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DATech(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 für Technik e.V.),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시험, 인증기관을 조정하는 DEKITZ(Deutsche Koordinierungsstelle für IT-Nomitätsprüfung und Xertifizierung) 등이 활동함.

○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의 인정을 받은 시험인증기관만 시험 및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 협회, 연방정부 등으로 서로 다른 인정주체들의 인정을 받은 시험인증기관이 활동함.

○ 이처럼 서로 다른 인정기구가 시험인증기관을 인정함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이는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와 더불어 국제무역에 있어서 기업 및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DAR는 각 인정주체들이 상호협의 하에 인정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인정주체들 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

○ 또한 주로 DAR의 회원들인 비규제분야의 인정기구들의 ILAC, IAF, 그리고 EA 등과 같은 국제인정기구나 지역인정기구에 대한 가입은 다소 복잡하게 이루어짐.

- DACH, DAP, DATech, TGA와 DKD은 EA의 정회원 및 EA-MLA 서명국이며, 또한 DASMIN 회원들임.

- 교정분야는 DKD가 교정분야, 시험분야는 DACH, DAP, DATech이 MRA 서명국 및 ILAC의 정회원 자격을 가짐.

- DAR은 국가조정기관(National Coordination Body)의 자격으로서 ILAC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IAF는 TGA, DAP 및 DATech를 대신하는 자격으로 DAR을 회원으로 포함시키고 있었음.

- DAP와 DATech는 제품인증 분야의 IAF-MLA 서명국이며, TGA는 품질경영시스템 및 환경경영시스템 분야의 IAF-MLA 서명국이었음.

- 이에 비해 GAZ와 DIAS는 인정기구 협의체의 회원이 아니며, MLA 서명국도 아니었음.

② 단일인정기구 DAkkS 설립

○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일인정기구인 DAkkS로 통합되기 전 독일의 인정제도는 분야별로 특화된 인정기구와 지정기관이 병렬적인 형태로 구축·운영되는 형태를 취하였음.

○ 이러한 병렬적인 복수인정제도는 부문별로 특화된 인정기구들의 높은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음.

○ 그러나 복수인정기구 존재에 따른 중복인정, 중복평가, 복잡성과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제적 승인 부족 등의 문제점도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독일정부는 독일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오래 전부터 인정시스템 변경을 위해 논의를 해오다 1국가 1인정기구를 규정한 EU의 EC결정(Regulation EC 765/2008: 인정 및 제품마케팅관련 시장 감시에 대한 요구사항) 공표에 따라 2009년 7월 31일 "독일 인정기구에 관한 법률"(AkkStelleG)을 제정함(동년 8월 7일부터 발효됨).

- EU의 EC결정(Regulation EC 765/2008)은 회원국에 대해 단일 인정기구 보유와 예적인 경우에만 다른 국가에서의 인정업무 수행(해외에서의 인정업무 경쟁 금지), 공공과 민간기관에 의한 인정업무 수행, 법정분야와 민간분야 적합성 평가기관 포함 등을 규정함.

○ 독일의 인정기구 통합은 먼저, 민간 인정기구를 통합하여 독일인정협회(German Association for Accreditation GmbH, 이하 DGA)를 설립하고 이 DGA를 다시 DAkkS와 통합하는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짐.

□ 독일인정협회((Deutsche Gesellschaft für Akkreditierung, 이하 DGA) 설립

○ EU의 Regulation (EC) No. 765/2008 시행과 2009년 7월 독일의 인정기구법(Accreditation Body Act (AkkStelleG)) 도입에 따라 2010년에 독일의 인정제도에 큰 변화가 발생함.

○ 2009년 9월 3개의 민간 인정회사, 즉 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 Chemie GmbH(이하 DACH), Deutsches Akkreditierungssystem Prüfwesen GmbH (이하, DAP) and the Trägergemeinschaft für Akkreditierung GmbH/DATech(이하, TGA/DATech)이 합병하여 독일인정협회(German Association for Accreditation GmbH, 이하 DGA)를 설립함.

- 이에 따라 유럽인정기구(European accreditation organisations, 이하 EA)에서 DACH, DAP 그리고 TGA/DATech 회원지위는 DGA로 이전됨.

□ 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 GmbH(DAkkS) 설립

○ 민법상 법인에 대해 인정기구의 의무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

AkkStelleG의 Section 8 규정에 따라 국가인정기구 설립 책임을 맡고 있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이하 BMWi)는 새로운 인정기구 법인(GmbH)인 DAkkS를 설립함.

○ DAkkS를 설립에 따라 2009년 12월 17일 DGA는 DAkkS와 합병되고, 여기에 더해 독일교정기구(Deutsche Kalibrierdienst, 이하DKD)가 BMWi의 명령에 의해 DAkkS로 이관됨.

② DAkkS의 구조

○ 민간 인정기구인 DGA와 DKD의 DAkkS로의 통합에 따라 DAkkS는 지분의 2/3은 독일정부가, 1/3은 독일산업연맹(Federation of German Industries (BDI))이 대표하는 민간업계가 3분의 1을 보유하는 유한회사형태의 인정기구가 됨.

- DAkkS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독일행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기술적 감독 하에서 인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연방정부의 관리 및 감독을 통해 인정결과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기준들을 사용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DAkkS의 내부 조직체계는 EC No.765/2008의 제3항에 따라 강제 및 임의인정 두 분야 모두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조직구조는 <그림>과 같이 6개 분야 약 50여개 기술분야로 이루어짐.

<그림 Ⅲ-2> DAkkS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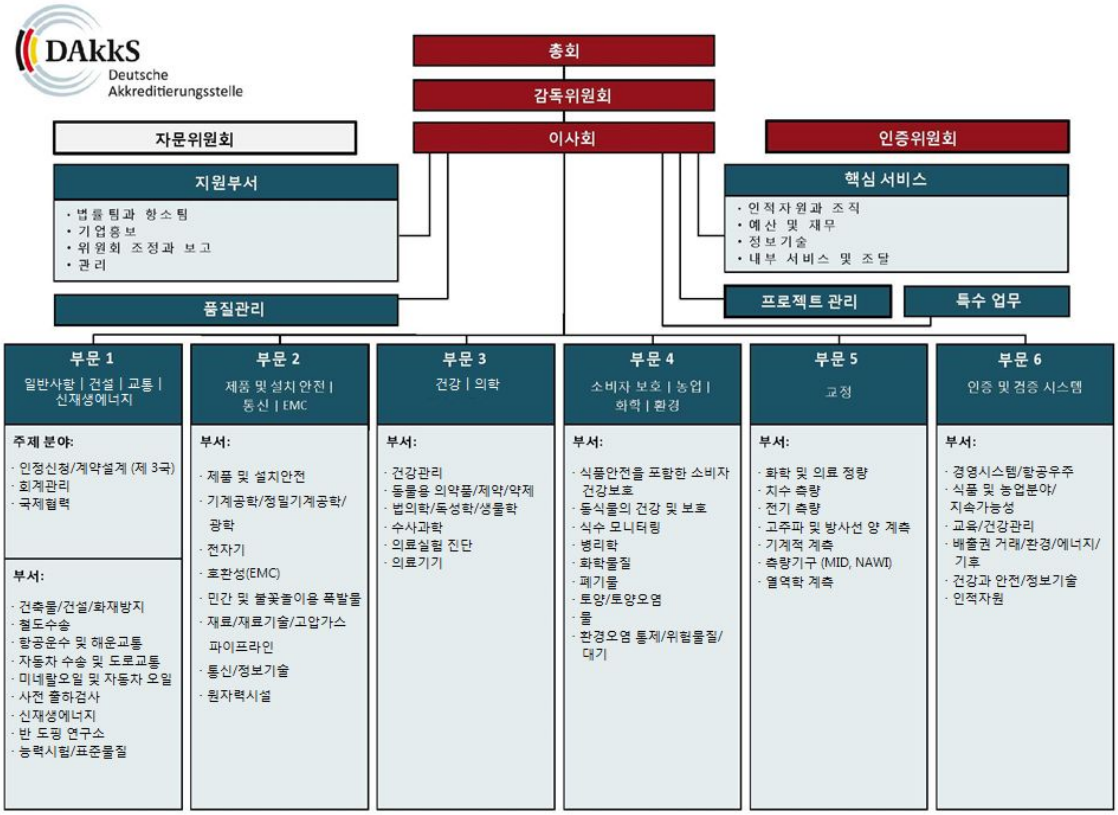

③ DAkkS의 인정 현황

○ DAkkS의 인정 현황을 보면 2015년 8월 현재 4,002개 기관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9> 독일 DAkkS(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의 인정 현황

단위: 개

인증 종류	개수
교정기구(ISO/IEC 17025)	456
시험소(ISO/IEC 17025)	2,249
표준물질생산자(ISO Guide 34)	8
메디컬 시험소(ISO 15189	426
검사기구(ISO/IEC 17020)	248
제품인증기관(ISO/IEC 17065)	239
제품인증기관(EN 45011)	68
인력(자격)인증기관(ISO/IEC 17024)	47
경영시스템인증기관(ISO/IEC 17021)	224
숙련도검사기관(ISO/IEC 17043)	18
검증기구(온실가스 등)(ISO 14065)	19

전체	4,002

(3) 일본

1) 개관

○ 일본은 정부 주도로 IAJapan[14] 등 3개의 인정기구를 설립하였으나, 최근에는 인정기구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단일화를 모색 중임.

○ 일본의 인정기구는 <그림>과 같이 JASC, JAB, IAJapan 이외에도 민간기구로서 일본화학시험소인정기구(JCLA: Japan Chemical Laboratory Accreditation), 전자기 환경시험소 인정센터(VLAC: Voluntary EMC Laboratory Accreditation Center)가 있음.

○ 일본은 1997년 공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JNLA(일본국립시험소인정제도)를 설립하였으며, 제도창설 초기에는 경제산업성이 시험소 인정업무를 수행했지만 2002년부터 인정업무가 독립행정법인인 제품평가기술기반구조(NITE)의 인정센터(IAJapan)로 이관됨.

<그림 Ⅲ-3>일본의 적합성 평가체제와 인정제도

○ 일본은 독립행정법인인 NITE가 국제기준인 ISO/IEC17011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NITE인정센터인 IAJapan의 시험소 적합성인정프로그램인 JNLA(Japan 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system)는 인정기관에 대한 국제기준인 ISO/IEC Guide 58에 따라 시험소의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동 프로그램은 2004년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등록제로 변경을 하였고 등

14) International Accreditation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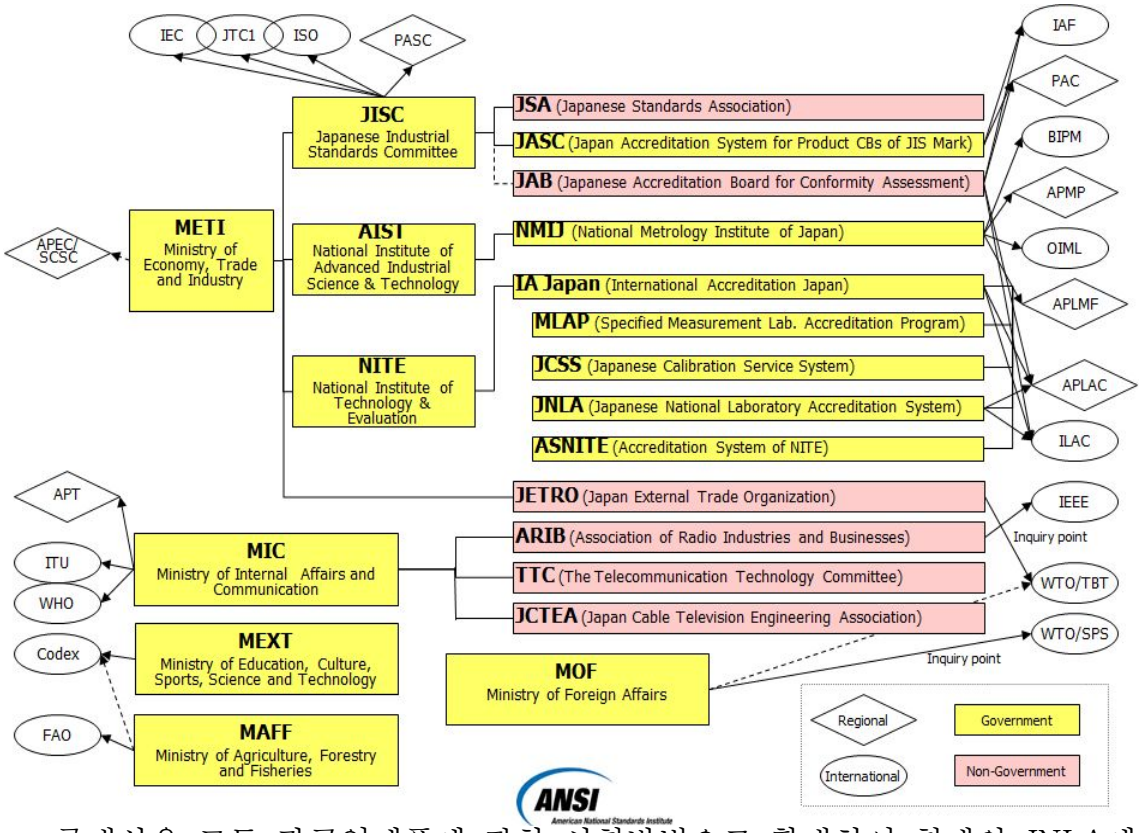

록대상을 모든 광공업제품에 관한 시험방법으로 확대하여 현재의 JNLA에 이르고 있음.

○ JNLA는 현재 ILAC 및 APLAC의 상호인정협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현재 88개의 시험소를 인정함.

2) 일본 인정기구의 운영체제

○ 일본 인정기구 운영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분야별로 복수의 인정기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임.

① 제품 및 인력(요원)분야 인정

□ 공익재단법인 일본적합성인정협회(JAB: Japan Accreditation Board)

○ 1993년 11월 사단법인 경제단체연합회의 주도 아래 35개 산업단체로부터 출연을 받아 「재단법인 일본품질시스템심사등록인정협회」의 명칭으로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제도에 대한 인정기관으로 설립됨.

○ 소관 관청은 당시 통상산업성 및 운수성이었으며, 1996년 6월 환경관리시스템 심사등록·인증기관, 시험소 등에 대한 인정 업무를 추가함.

- JAB은 ISO 9000 시리즈의 품질관리시스템 심사등록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관련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기관으로서 설립되었으나 1996년에, 화학 및 기계·물리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의 인정을 개시하여 현재는 전기 시험, 화학 시험, 기계 시험을 중심으로 한 폭넓은 분야의 시험소 인정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명칭을 「재단법인 일본적합성인정협회」로 변경하고, 2010년 7월에 공익법인제도개혁 관련 3개 법에 근거해 「공익재단법인 일본적합성인정협회」로 새롭게 발족됨.

- 관할 관청은 2010년 이전에는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이었으나 현재는 내각부임.

○ 주요 업무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 등록, 공표 및 적합성 평가기관에 의해 인증된 적합 조직의 공표, 외국의 인정기관과의 상호 승인 및 국내외 관계 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기타 이러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개발 및 보급 계발 활동 등임.

<표 Ⅲ-10> JAB의 업무범위

- JIS Q 17021에 의한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의 인정 및 등록 ·품질관리시스템(JIS Q 9001), 환경관리시스템(JIS Q 14001), 의료기기(JIS Q 13485), 항공우주(JIS Q 9100), 전기공작물용접(JIS Z 3400), 전기통신(TL 9000), 정보보안관리시스템(JIS Q 27001), 식품안전관리시스템(ISO 22000), 에너지관리시스템(ISO 50001) - JIS Q 17024에 의한 요원 인증 기관의 인정 및 등록 - JIS Q 0065에 의한 제품인증기관의 인정 및 등록 - JIS Q 14065에 의한 온실 효과 가스 타당성 확인·검증 기관의 인정 및 등록 - JIS Q 17025에 의한 시험소·교정기관의 인정 및 등록 - JIS Q 17020에 의한 검사기관의 인정 및 등록 - JIS Q 0034 및 JIS Q 17025에 의한 표준물질생산자의 인정 및 등록 - ISO 15189에 의한 임상검사실의 인정 및 등록 - MRA법에 근거하는 지정 조사 업무(나라의 대행 업무)

- 적합 조직(품질관리시스템(JIS Q 9001)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의 공표 - 해외 인정기관과의 상호 승인의 추진 - 조사 및 연구 인정·인증과 관련되는 불평등에의 대응 사업의 보급 계발 활동·홍보 활동 -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 기타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 JAB은 1996년부터 화학, 기계, 물리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산은 114,350千엔(억원)이며, 200명 이상의 심사원을 보유하고 있음

<표 Ⅲ-11> JAB의 심사원 현황(2014년 5월 20일 현재)

구분	계약심사원	직원심사원
경영시스템	48	5
시험소, 교정기관, 임상검사실, 표준물질생산자, 숙련도시험제공자	145	8
합계	193	13

○ JAB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관은 2015년 8월 현재 472개 기관임.

<표 Ⅲ-12> JAB 인정 현황

단위: 개

기관	이름
경영시스템인증기관	43
인력 인증 기관	3
제품 인증 기관	6
온실 가스 검증 및 검증 기관	12
시험소	287
교정기관	26
표준 물질 생산자	2
임상검사실	82
검사기관	9
기능시험제공자	2
계	472

□ Japan Accreditation System for Product Certification Bodies of JIS Mark(JASC)

○ 2005년 10월 1일에 새로이 출범된 신JIS 마크 제도에 대하고, 광공업품의 제조업자나 수출입·판매업자나 가공업자가 제품에 신JIS 마크 인증을 하

는 (등록)인증기관은 일본 공업표준화법 제 27조 제 1항에 따라 정부(주무 대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함.

- 공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기관 인정은 JASC가 수행하고 있음.

- 이들 기관은 정부에 대해 공업표준화법에 근거하는 등록 신청 수수료의 액수등을 정하는 정령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함.

○ JASC로부터는 2015년 8월 현재 24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②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 인정

□ NITE

○ 일본의 시험소 인정제도는 2002년 이후 경제산업성 산하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가 기존의 4개 인정기구(MLAP, JCSS, JNLA, ASNITE)를 통합한 IAJapan(International Accreditation Japan)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 NITE는 생활안전, 적합성 인정, 화학물질관리,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의 제품평가기술을 취급하는 기구로, 인정센터인 IAJapan은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과 관련되는 인정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관임.

○ 통합된 인정기구인 IAJapan 4개의 개별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Ⅲ-13> IAJapan 4개의 인정 프로그램

구분	내용
MLAP	- 계량법에 따라 운영
JCSS	- 계량법에 따른 교정에 관한 인정
JNLA	- 공업표준화법에 따른 시험소 인정
ASNITE	- JCSS 범위 밖의 교정기관과 JNLA 범위 밖의 시험기관, IT보안 및 표준물질 관련 인정

□ 일본시험소인정제도(JNLA)

○ 일본도 다른 국가나 우리나라 KOLAS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 적절한 시험 결과를 제공하는 능력이 있을지를 제3자가 인정하는 시험소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시험소가 충족해야할 기준으로서 ISO/IEC17025(일본 JIS Q17025)[15]를 시험소 인정기관이 충족해야할 기준으로서 ISO/IEC17011(일본은 JIS Q17011)[16]를 채택하고 있음.

○ JNLA는 공업표준화법에 근거한 시험소등록제도로, 시험소인정제도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자기적합선언에의 활용을 목적으로 일본은 1997년에 JNLA(Japan 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system)의 운영을 시작함.

○ 그 후 2004년 행정개혁 등의 관점에서 행정재량의 여지가 없는 등록제로 변경되어 신JIS 마크 표시제도의 「제품시험」에의 활용도 추가되어 등록의 대상을 「모든 광공업품과 관련되는 시험 방법의 JIS」에 확대되어 현재의 JNLA에 이름.

○ JNLA의 업무는,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olution) 인정센터(IAJapan)에서 실시하고 있음.

□ JCLA

○ JCLA는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환경 분석, 화학제품 시험 등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 산업분야의 인정기구임.

- 후생노동성의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등록검사기관,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하는 사고원인 구명기관 및 시험소 인정 제도에 의한 시험소이기도 함.

③ 시스템 인정

15) ISO/IEC17025에서는,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 제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 기관이 특정의 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요소(일반 요구 사항)가 규정규정되고 있는 요소는, 조직, 품질 시스템, 문서관리, 기록의 관리, 요원, 시설 및 환경조건, 설비, 측정의 추적가능성 등임.

16) ISO/IEC17011에서는, 인정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요소(일반 요구 사항)가 규정되고 있고, 규정되고 있는 요소는, 인정 기관의 조직, 품질 시스템, 인적자원, 인정의 프로세스, 인정기관 및 적합성 평가 기관의 책임 등임.

○ 일본의 품질경영, 환경경영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은 JAB이 담당하고 있음.

○ 2012년 6월 현재 JAB에 등록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은 총 47개이며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은 총 43개임.

○ 이밖에 식품분야에 대한 인정도 수행하고 있고, 품질경영의 경우에는 부문별 심사등록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자동차부품(QS9001), 의료용구(JIS Q13485), 우주항공(JIS Q9100), 전자통신(TS9000)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한편, 요원인증과 관련해서는 2012년 6월 현재 JAB이 용접, 환경, 품질, 식품 등에 대해 4개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있음.

④ 기타 주요 시험인정제도

○ 일본의 시험기관 인정제도는 IAJapan의 JNLA 이외에 JAB, JCLA, VLAC 등에서 수행하고 있음.

□ VLAC

○ 1999년 4월 VCCI 시험소인정센터는 ISO/IEC 가이드 58의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처리장치 등 전자파장애 자율규제협의회(VCCI)가 설립하였으며 1999년 VCCI에서 분리 독립하여 주식회사 전자환경시험소인정센터(VLAC)라는 EMC관련 시험소의 인정기관이 됨.

○ VLAC의 설립에 따라 VCCI의 측정 설비 등록제도로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ISO/IEC 17025에 근거해 EMC 시험소의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VLAC는 전자양립성(EMC), 소음, 통신기 성능, 소비 전력, 및 전기 안전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VLAC는 2007년 1월 ILAC-MRA 협정서에 서명하였고, 2001년 10월에는 APLAC 2001에 가입하고 2003년 11월에는 APLAC MRA 협정서를 체결함.

○ VLAC로부터는 2015년 8월 현재 40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3) 일본 인정기구의 인정 현황과 과제

○ 일본 인정기구로 부터는 2015년 8월 현재 전체 1,709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표 Ⅲ-14> 일본 인정기구 인정 현황

단위: 개

구분		개수	비고
IAJapan	JCSS	459	MRA 해당 159 개
	JNLA	531	MRA 해당 149 개
	MLAP	93	
	ASNITE	101	
JAB	경영시스템인증기관	43	
	인력 인증 기관	3	
	제품 인증 기관	6	
	온실 가스 검증 및 검증 기관	12	
	시험소	287	
	교정기관	26	
	표준 물질 생산자	2	
	임상검사실	82	
JASC		24	
VLAC		40	
합계		1,709	

○ 일본의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인정기구별 인정업무 범위를 보면 <표 > 과 같음.

- 이러한 복수인정기구 운영에 따라 일본은 독일의 DAR와 유사하게 인정기관협의회(JAC : Japan Accreditation Council)을 설립함.

- JAC는 각 인정기구가 지속적으로 공통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산하의 시험소 인정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검토하는 시험소 인정기관 연락회를 두고 있음.

<표 Ⅲ-15> 일본 인정기구의 인정업무 범위

		QMS/ EMS	요원인증 기관	제품인증 기관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JASC				√			
JAB		√	√	√	√	√	√
NITE	MLAP				√(계량법)		
	JCSS					√	
	JNLA				√		
	ASNITE				√(RM생산 기관 추가)	√	
JCLA					√(화학/식품)		
VLAC					√(EMC)		

주: QMS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EMS는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을 의미

○ 일본의 복수인정기구의 경우 경쟁요소에 의한 장점보다 중복적 비효율성 측면에서 단점이 많아 실패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일본은 경제규모에 비해 시험인증 산업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국가로 정부 개입을 통한 국가 인정 거버넌스 검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 전체적으로 독일, 영국과 같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인정을 받은 기관 수가 현wj히 떨어지는 것은 일본 인정기구의 마케팅 능력 등 경쟁력이 낮다는 것을 보여줌.

○ 일본의 복수의 인정기구는 과거 독일의 인정제도와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그러나 독일은 민간 역량을 바탕으로 우수한 시험소 및 인증기관이 시장을 주도하였다면 일본은 민간 역량이 독일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시장을 이끌고 왔다는 점이 다름.

○ 이는 일본이 독일과 유사한 복수 인정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독일에 비해 복수인정제도로 인한 문제점이 더 심각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복수인정기구가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정기구의 설립과 운영이 전문성을 가진 집단에 의하여 시장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함.

- 복수 인정제도가 가지는 일부 장점과 민간 역량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복수 인정제도 문제점을 고려하여 단일인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민간 주도로 시장에 기반하여 상향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강함.

- 이에 따라 복수 인정제도에 따른 전문성 강화라는 장점보다 복수인정제도가 가지는 단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실제 일본의 시험인증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인증기관들이 SGS, TÜV, UL 등과 같은 다국적 인증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일본의 인정제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함.

(4) 홍콩

1) 개관

○ 홍콩인가처(Hong Kong Accreditation Service, 이하 HKAS)는 1998년에 국민에게 인정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홍콩실험소인가처(HOKLAS: Hong Kong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와 홍콩인증기구인가계획(HKCAS), 홍콩검험기구인가계획(HKIAS)를 통합하여 설립하였으며, 적합성 평가기관(시험, 검사,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HKAS는 홍콩특별행정구 상공부 내 정부기관으로 설립되었다가 2000년 상공부 해체에 따라 기술혁신위원회(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로 이관됨.

- HKAS는 비메디칼시험 및 교정·시험기관(ISO/IEC 17025:2005),메디칼시험기관 : ISO 15189:2007), 표준물질생산기관(ISO/IEC 17025:2005와 병행한 ISO Guide 34:2009), 숙련도시험운영기관(ISO/IEC 17043:2010), 검사기관(ISO/IEC 17020:1998 및 IAF/ILAC-A4:2004)에 따라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HKAS는 건설시료시험을 제외하고, 홍콩 소재 기관에게만 인정업무를 제공하고 있고, HOKLAS에서 운영 중인 건설시료 시험범위의 경우, 중국 주강삼각주 내 소재 기관 신청을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림 Ⅲ-4> 홍콩의 인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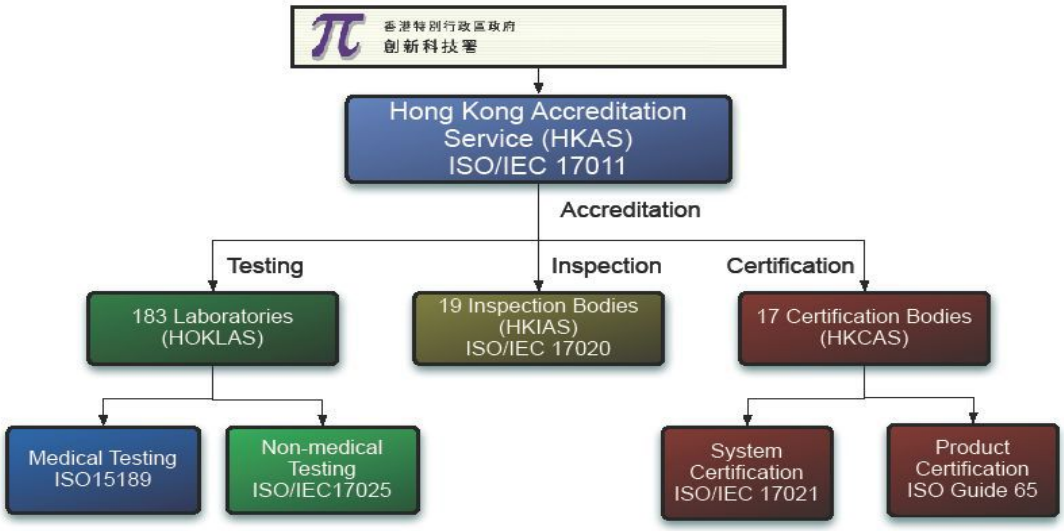

자료:

○ HKAS는 홍콩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해 <표>와 같은 3개 세부 프로그램을을 통해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 Ⅲ-16> HKAS의 세부 인정 프로그램

구분	인정대상
HOKLAS	시험소, 표준물질생산자, 숙련도시험제공자
HKCAS	인증기관, 온실가스 검증기관
HKIAS	검사기관

2) HKAS 운영시스템

○ HKAS는 <표>와 같이 14개 기술 분야에 대해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326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표 Ⅲ-17> HKAS 인정 현황

프로그램	기술분야	인정받은 기관 수
HOKLAS	교정기관	31
	화학	25
	한약재	11
	건설시료	52
	전자기 제품	15
	환경	32
	식품	23
	법과학	1
	메디컬	31
	의약품	0
	물리 및 역학	20
	섬유	10
	어린이용 완구	25
	기타	7
	숙련도시험제공기관	3
	표준물질생산기관	1
HKIAS	건설 분야 제품	9
	소비자 제품	4
	실내공기 질	9
HKCAS	ISO 9000(품질경영시스템)	17(대부분의기관이 공통적으로 3개 인정 획득)
	ISO 14000(환경경영시스템)	
	ISO/IEC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	
전체 인정받은 기관		326

○ HKAS는 IAF, ILAC, PAC, 그리고 APLAC의 회원으로 73개국, 91개 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표 Ⅲ-18> 홍콩 HKAS의 상호인정협정 현황

		개수	개수
국가별		73	
인증기관별			91
HOKLAS	측정		71
	시험		85
	의료시험		50
	RMP		9
	PTP		7
HKCAS	QMS		52
	EMS		48
	제품		50
HKIAS	검사		53

(5) 중국

1) 개관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기존 품질 및 안전 관련 인증제도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제도를 도입함.

○ 동 제도는 정부가 관할하는 표준 및 기술기준의 거의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제도로서 중국의 중앙 정부가 제정한 다양한 표준 및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시험인증관련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 중국은 적합성 평가체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앙집중적 유형에 속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기준 제정에 있어서 통일적인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특징임.

2) 중국 적합성평가체계의 구조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의 소속 위원회로 표준화를 전담하는 국가표준관리위원회(SACS)와 적합성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가 설립하여 통일적인 적합성 평가체계를 확립함.

<그림 Ⅲ-5> 중국 적합성 평가시스템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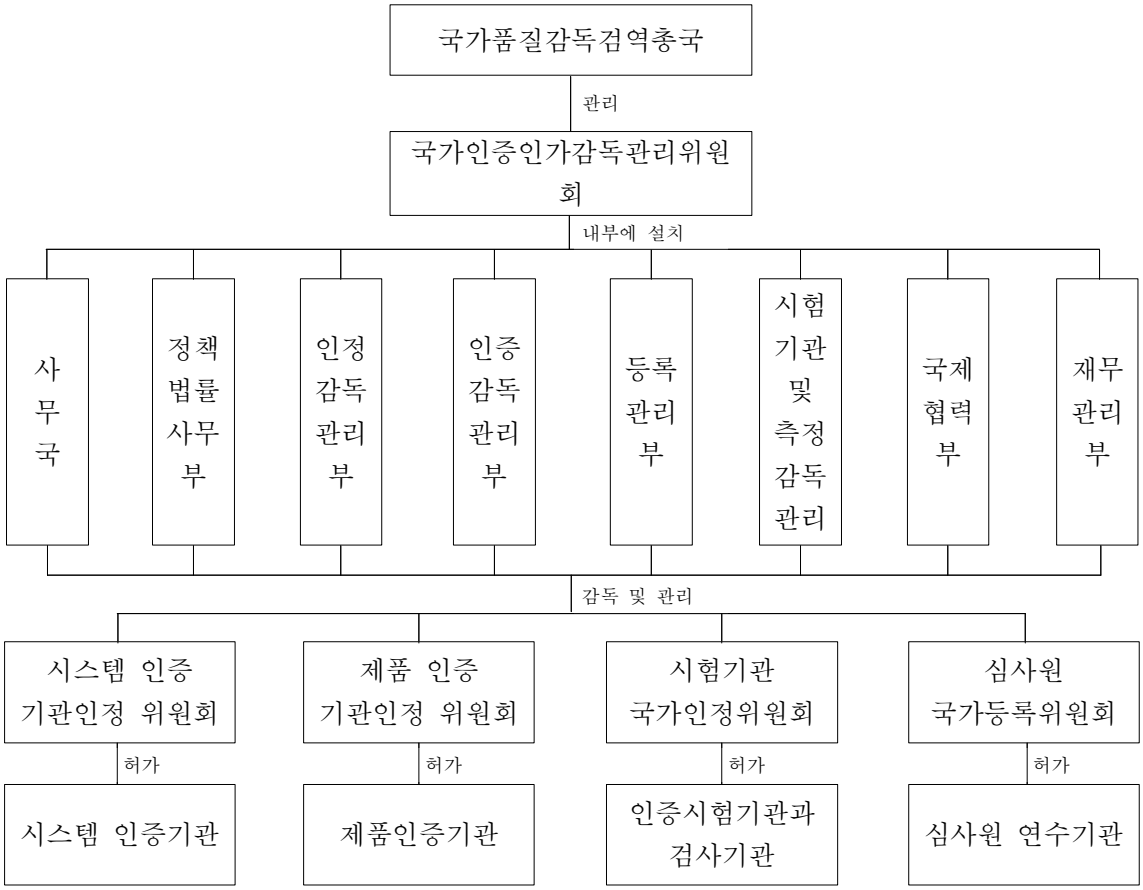

○ 이들 적합성 평가관련 각 기관들의 역할은 <표 Ⅲ-20>과 같음.

○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NCA는 분야별 인정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이들 위원회가 인증기관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관리·감독하고 있음.

<표 Ⅲ-20> 중국 적합성 평가기관 역할

기관	역할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 단일강제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2001년 4월 국가질량기술감독국과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을 통합하여 설립 - 표준화, 품질감독, 안전검사, 수출입검사·검역, 측정 및 계량업무 총괄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	- 중국의 표준화 작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국가인증인가감	- 2001년 8월에 인증/인정 감독분야를 통합하여 국무원 직속 행정기관

독관리위원회(CNCA)	으로 설립 - CNCA는 AQSIQ의 관리를 받고 중국 내 인증 및 인정분야의 통합관리 및 감독

- CNCA가 AQSIQ의 관리 하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 “인증기술규범관리방법”(2006. 3. 1)에 따라 인정위원회를 관리·감독하고 있음 <그림 Ⅲ-5> 참조)

3) 중국 인정제도 통합과정

○ 중국은 국무원 산하의 정부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인정업무에 시작하면서, 복수의 인정시스템으로 운영되기 시작함.

○ 그 결과 시험인증기관들이 중복 인정에 따른 고비용과 비효율적 운영을 감수해야 했으며, 이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기업들에게 높은 인증비용 부담으로 이어짐.

○ 또한 복수의 인정제도는 서로 다른 인정요건을 요구하여 일관성이 없었으며, 인정제도 간의 경쟁은 인정품질을 제고하기 보다는 인정품질을 저하시킴.

○ 이러한 문제점 해소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합성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해 중국 국무원은 CNCA를 설립하여, 인정, 인증에 대한 감독, 관리 및 조정 권한을 강화함.

○ CNCA는 중국 단일인정기구인 CNAS(China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for Conformity Assessment)에게 인정기구로서의 권한을 부여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CNAS로의 통합과정을 보면, 이러한 통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임.

○ 2002년 이전 중국에는 <표 Ⅲ-21>과 같이 8개 인정기구가 존재하였으나 2002년부터 인정기구 통합을 추진하여 2006년 3월 CNAS로 통합함.

- 당시 중국은 거의 모든 인증별로 다른 인정기구를 보유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 해소하기 위해 중국은 2단계에 걸쳐 인정기구를 통합함.

<표 Ⅲ-21> 2002년 이전 중국의 인정기구

품질 및 기술 감독 관련 정부 부처	CNACR(for QMS CB, 1994)	중국품질경영체계인증기관 국가인정위원회
	CNACL(for Laboratory, 1994)	중국시험기관 국가인정위원회
	CNACP(for Product CB, 1994)	중국제품인증기관 국가인정위원회
수출입 검사, 검역관련 정부 부처	CCIBLAC(Laboratory, 1996)	중국국가출입국 검사·검역 시험기관 인정위원회
	CNAB(for CB, 1992)	중국국가 수출입기업 인증기관 인정위원회
환경보호부	CACEB(for EMS CB, 1997)	중국환경경영체계 인증기관 인정위원회
	CACOB(for Organic Food CB, 2001)	중국유기농식품 인증기관 인정위원회
국가 안전 생산 감독 관리총국	CNASC(for OHSMS CB, 2000)	전국직업안전건강 관리체계 인증기관 인정위원회

① 1단계 통합

○ 1단계는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기구들과 시험소에 대한 인정기구를 각각 별도로 통합함.

- 먼저 2002년 2월 CNAB, CNACR, CNACP가 CNAB로 통합을 하였고, 2002년 4월에는 CNASC를, 2002년 9월에는 CACEB를 그리고 2004년 3월에 CACOB을 CNAB로 통합함.

- 이처럼 2002년 2월부터 시작된 인정기구의 통합이 2004년 3월에 CNAB로 마무리가 됨.

- 한편, 시험기관 인정기구의 통합은 2002년 7월에 CNACL과 CCIBLAC가 CNAL로 통합됨으로서 완료됨.

② 2단계 통합

○ 2단계 통합은 2006년 3월 2개 인정기구인 CNAB와 CNAL이 CNAS로 통합하는 것으로, 2단계 통합 이후 중국은 명실상부한 단일인정제도를 보유한 국가로 변화함.

③ CNAS의 조직

○ CNAS 조직은 이사회(Board),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인증기관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for Certification Body), 시험소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for Laboratory), 검사기관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for Inspection Body), 평가위원회, 소청위원회(Appeal Handling Committee), 최종사용자 위원회(End-User Committee), 사무국(Secretariat)으로 구성됨.

- 이사회는 5개의 이해관계자 그룹(정부, 적합성평가기관, 적합성평가서비스의 고객, 적합성평가의 사용자, 기술전문가)을 대표하는 64개 조직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음.

○ 사무국의 직원은 200명 이상이며, 4,000명 이상의 평가사와 기술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음.

○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내부기관으로 이사회가 산회되었을 경우 이사회가 부여한 권한에 대한 임무를 수행함.

④ CNAS의 인정 현황

○ CNAS의 인정범위는 인증기관의 경우 QMS, EMS, OHSAS, TL9000, FSMS, ISMS, Product, Personnel, SPCA 등이며 그 외에도 시험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숙련도시험 제공기관 등이 포함됨.

○ 2012년 4월 현재 CNAS의 인정을 받은 기관은 7,708개로 이들 인증기관은 약 600,000개의 인증서를 발급함.

<표 Ⅲ－22> 중국 CNAS의 인정 현황

단위: 개

분류	이름	개수
인증기관	QMS	97
	FSMS	31
	GAP	15
	EMS	89
	ISMS	9
	OP	20
	OHSMS	84
	P	42
	FC	2
	SPCA	3
	SC	2
	EC9000	54
	PC	9
	R	1
	TL	6
	HACCP	18
	GMP	5
	ITSMS	4
	ENMS	11
	소계	502
시험교정기관	시험/교정소	6,472
	메디컬 시험소	186
	표준물질생산자	11
	바이오안전시험소	61
	숙련도검사제공자	39
	에너지스타 시험소	58
	소계	6,827
검사기관		379
합계		7,708

○ 단일인정기구로의 통합을 통해 중복인정을 방지함으로써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과 관련한 부담이 경감됨.

○ 또한 서로 다른 인정기관간 인정요건의 불일치가 해소되고 인정요건이 조화를 이루게 되었고 그 결과 인정의 효율성과 인정의 권위가 향상됨.

(6) 영국

○ 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이하 UKAS)는 영국의 단일인정기구

로 1995년 National Measurement Accreditation Service(이하 NAMAS)와 National Accreditation Council for Certification Bodies(NACCB)를 합병하여 설립함.

- NAMAS는 1985년 National Testing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NATLAS, 1981년 설립)과 British Calibration Service(BCS, 1966년 설립)을 합병하여 설립함.

○ 이처럼 영국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단일인정기구로 이행함.

○ UKAS는 비영리 민간법인(법적 지위는 Company limited by guarantee)로 약 190명의 직원과 250명 이상의 외부 기술심사원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lleges 등 19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UKAS는 주주회사가 아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음.

○ 영국 UKAS 인정현황을 보면, 시험소 1,598개소를 포함하여 전체 3,029개 기관을 인정함.

<표 Ⅲ-23> 영국 UKAS의 인정 현황

단위: 개

구분			개수
시험소			1,598
교정소			498
인증기구	경영시스템	QMS(Quality Management System)	95
		EMS(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66
		EnMS(Energy Management Systems)	11
		FSMS(Food Safety Management Systems)	24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26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s)	9
		H&SMS(Health & Safety Management Systems)	44
		ITSMS(IT Service Management Systems)	6
		SCSMS(Supply Chai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3
		PSC(Private Security Companies)	2

		EMAS(Environmental Verifiers)	10
		AMS(Asset Management Systems)	5
		CMS(Competence Management Systems)	1
		소계	302
	제품, 프로세스, 서비스		115
	인력(자격)		23
	소계		440
검증기구-온실가스			12
검사기구	엔지니어링		159
	식품		7
	석면		161
	기타		29
	소계		356
숙련도검사 제공자			21
표준물질생산자			11
메디컬 시험소			44
이미징 서비스(ISAS)			22
생리학서비스(IQIPS)			27
합계			3,029

(6) 미국

○ 미국은 지역이 넓고, 산업구조가 복잡함에 따라 일찍부터 민간 중심의 다원화된 인정기구(정부1개, 민간8개) 운영 중임.

○ 민간부문의 인정기관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인증기구로 보완하고 있으며, 국제 활동은 상무부 소속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이하 NVLAP)*가 주도하고 있음.

- NVLAP는 상무부 소속 표준기술원(NIST)이 운영하고 있음.

Ⅳ. 인정제도 현황

1. 인정기구

(1) 개관

○ 우리나라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1992년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정 영역별로 국제인정기구 활동에 대응하는 KOLAS, KAS, KAB을 설립하여 운영 중임(국제 인정기구에 대한 대응관계는 <그림 Ⅳ-1> 참조>.

<표 Ⅳ-1> 우리나라 인정기구 현황(2015년 8월말 현재)

구분	KOLAS-국표원	KAS-국표원	KAB-(사)한국인정원
인정마크			
설립년도	1992.12.	2001.7.	1995.9.
인정대상	시험기관, 교정기관 등	제품인증기관	경영체제인증기관
인정수(2015년 7월 말 현재)	744개 기관	20개 기관	49개 기관
국제기구	ILAC/APLAC	IAF/PAC	IAF/PAC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주: 한국인정지원센터는 국표원으로 입주하여 인정 통합 업무체계 구축

○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복수인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그림 Ⅳ-1> 국제인정기구와 국내 인정기구(2015년 8월 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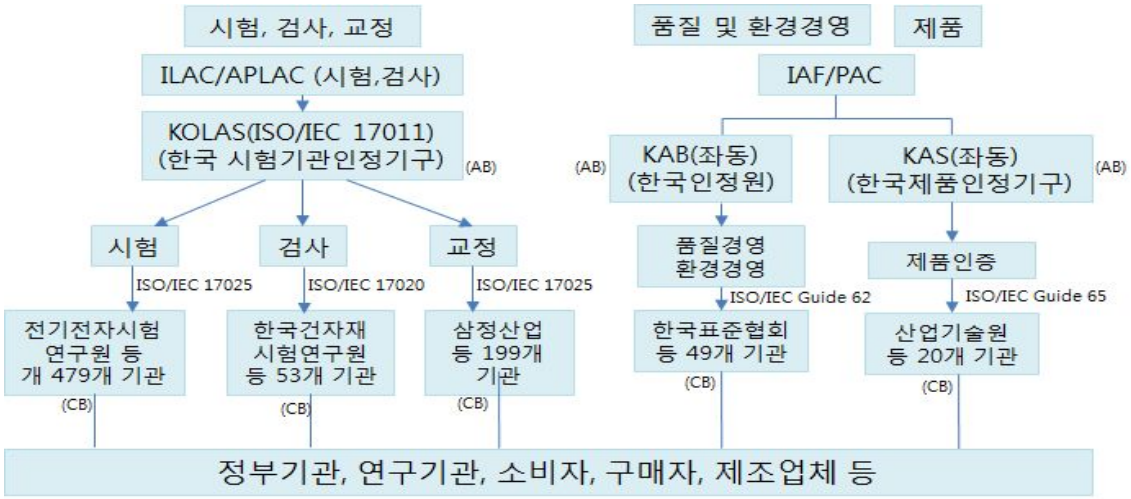

주: 1) 시험기관은 메디컬시험기관과 숙련도시험기관 포함
2) AB는 인정기구(Accreditatation Bod), CB는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

(2) 인정기구 개편 동향

□ 기존 인정기구 통합

○ 국표원은 기존 3개 인정기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민간의 전문인력이 지원하는 통합인정기구 체제로 개편 중임.

- 한국인정지원센터는 통합인정기구의 위탁업무 수행

<표 Ⅳ-12> 국표원의 기존 인정기구 통합

단계	내용
1단계: 2012년 말	(사)한국인정원이 국표원 인정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한국인정지원센터로 전환하고 국표원에 입주(통합체계 구축)
2단계: 2015년 중	인정기구 관련법(품공법, 환친법 등)을 정비하여 민관 협업체계를 갖는 인정기구(KOLAS + KAS + KAB)의 법적 통합 완료

○ 한편, KOLAS, KAS 등 기존 인정기구의 경우 국표법, KAB는 품공법 및 환친법 근거로 운영 중임.

<표 Ⅳ-13> 인정기구 근거 법령 현황

구 분		근거법령	운영주체
KOLAS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국표원
KAS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KAB	품질경영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한국인정지원센터
	환경경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 따라서 기존 인정기구를 단일인정기구로 통합할 경우 인정기구 관련법령(국표법, 품공법, 환친법)과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등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법령 정비는 기존 품공법과 환친법에 규정된 품질·환경경영체제 인정 관련 조항을 국표법으로 이관할 계획임.

- 그동안 국표법과 산표법 등에 이관을 검토한 결과, 산표법보다 정부인정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표법으로 편입을 추진함.

- 국조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 단일 인정기구 조정' 결과에 따라 타 부처 역할을 포함하여 단일인정기구 체제의 근거 마련 등 개정을 추진할 방침임.

<표 Ⅳ-14> 기존 인정기구 통합에 따른 관련법령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내용
단일인정 기구	- 국조실 결정에 따른 단일 인정기구 체계 및 부처 협력 사항 등 관련조항 신설
경영체제 인정	- 품질·환경 등 경영체제 인정의 정부 권한 규정
센터 설립 등	- 인정업무 지원을 위한 '한국인정지원센터' 설립 근거, 위탁사업 내용 및 인정관련 비용 규정 등 관련조항 신설도 검토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 범부처 인정기구 통합 논의

○ 인정기구 통합 논의는 우리나라의 기존 인정기구의 통합 논의 보다는 기존 인정기구 외에 부처별 새로운 인정기구 도입과 지정제도의 관계 설정을 중심으로 진행됨.

○ 따라서 기존 인정기구 통합 외에 통합 인정기구의 범부처 위상 설정 등 지정제도와 관계 설정이 논의의 중심을 이룸.

-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복수 인정제도 유지보다는 단일인정제도로의 개편과 이러한 인정제도의 범부처 수용 등 위상 설정이 중심을 이룸.

○ 그동안 인정제도와 관련하여 범부처 단일인정기구를 설립하려는 산업부와 독자 인정기구 설립을 추진한 환경부, 미래부, 식약처 등과 갈등이 지속됨.

- 방통위(2012년 4월), 미래부(2013년 6월) 등이 개별 인정기구 추진하려다 국표원 협의 등을 통해 철회함.

- 2013년 8월에는 산업부(국표원)가 국가표준기본법에 단일 인정기구 체제의 명문화를 추진하였으나 미래부, 식약처 등 다른 부처들이 전문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명문화를 유보하고 부처들도 개별 인정기구 설립은 자제하기로 함.

- 2014년 4월에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검증 분야는 기존 인정기구를 활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도 인정기구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향후 국조실의 단일/복수 인정 체제 결정에 따르도록 협의가 이루어짐[17].

- 이와 관련하여 가급적 1014년 12월 말까지 인정 관련 거버넌스 정비 방향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부처 이견 등으로 지연됨.

-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 주재로 1014년 10월과 1015년 3월 2차례에 걸쳐 인정기구 개편에 대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단인인정기구 도입방안을 마련함.

---

17) 환경부는 배출권 국제거래에 필요한 국가 간 검증기관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인정기구에 가입하고 직접 인정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배출량 검증기관(19개 기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MLA)을 위해, PAC 회원 가입(2014년 6월) 독자적인 인정기구 설립을 추진함.

○ 국조실은 부처별 인정기구 설립 움직임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인정기구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조정을 추진 중임.

<표 Ⅳ-15> 국가 단일인정기구 개편 추진 경과

시기	내용
12.4월	- 방통위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인정체계에 관한 고시”로 추진하였으나 국조실 조정으로 무산
13.6월	- 미래부(') : IT특별법에 “정보통신제품 등에 관한 인정기구 지정” 조항으로 추진하였으나 조정 과정에서 삭제
13.8월	-‘국표원은 국표법에 국가 단일인정기구 명문화개정 추진 * 국조실 주관회의(미래산업통상정책관,'13.8월)에서 관계부처 반대로 법제화가 무산
14.4월	- 환경부(환경과학원) GHG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기구 설립*을 표명함에 따라 국조실의 조정시작(단일/복수 인정체제 결정에 따르도록 협의) * 국제 배출권거래에 대비하여 인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14.6월 국제인정기구에 가입)
14.10~'15.3월	- 국조실(산업통상미래정책관) 주관 인정기구 개편에 대한 관계부처 조정회의 2회 개최(‘14.10월, '15.3월) - 2차 회의를 통해 관련부처의 반대의견 청취 및 개편방향 논의하였고 관련부처는 부처 고유영역에 대한 자율적인 추진 등 복수인정기구 입장 고수
15.3월	- 국가인정기구 관련 시험·인증기관 의견 수렴 실시 * KTC, KCL 등 3개 기관은 단일인정기구 선호, 에스테크는 반대의견 제시(확인)
15.4월	- 국조실 국가인정기구 개편관련 조정(안) 제시 * 국조실은 국가 단일인정기구(안)을 제안하고 관련부처 의견요청(‘15.4.10)
15.5월	- 각 부처별 조정안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및 의견제시 내용 검토 후 협의 예정 * 국조실은 부처간 세부사항 논의 및 협의(5월) 후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예정(6월 중)

2. 인정시장의 현황 및 전망

○ 인정시장 규모는 국제적인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국표원 3개 인정기구의 연도별 신규 인정과 갱신 인정에 다른 수수료 또는 매출액 수입규모라 할 수 있음.

<표 Ⅳ-3> 국내 인정시장 규모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연평균증가율
좁은				

KOLAS				
KAS				
KAB				
합계				

주: KOLAS와 KAS는 수입액, KAB은 매출액 기준임.

3. 국내 인정제도 운영 현황

(1) 인정기구 현황

□ KOLAS

○ KOLAS는 1998년 ILAC/APLAC 등의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획득하였고, 2015년 기준, 공인기관 인정 수는 744개로 2010년~2015년 동안 연평균 약 4.2%씩 증가함.

- 이는 국내·외 시험인증 산업규모 증가 및 각종 규제제도에서 KOLAS 기관 활용 증가에 기인함.

<표 Ⅳ-5> 한국인정기구(KOLAS) 연도별 인정현황

단위: 개,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2010~2015)
시험기관	370	403	416	460	468	466	4.7
검사기관	45	46	49	52	50	53	3.3
교정기관	181	193	189	192	201	199	1.9
표준물질기관	9	9	11	11	13	13	7.6
메디컬	-	-	-	-	2	4	-
숙련도	-	-	-	7	7	9	-
계	605	651	665	722	741	744	4.2

자료: 한국인정기구

○ 분야별로는 시험기관이 62.6%, 교정기관이 26.7%, 검사기관 7.1% 순서로 시험기관과 교정기관에 대한 인정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림 Ⅳ-2> KOLAS의 분야별 인정현황(2015년 8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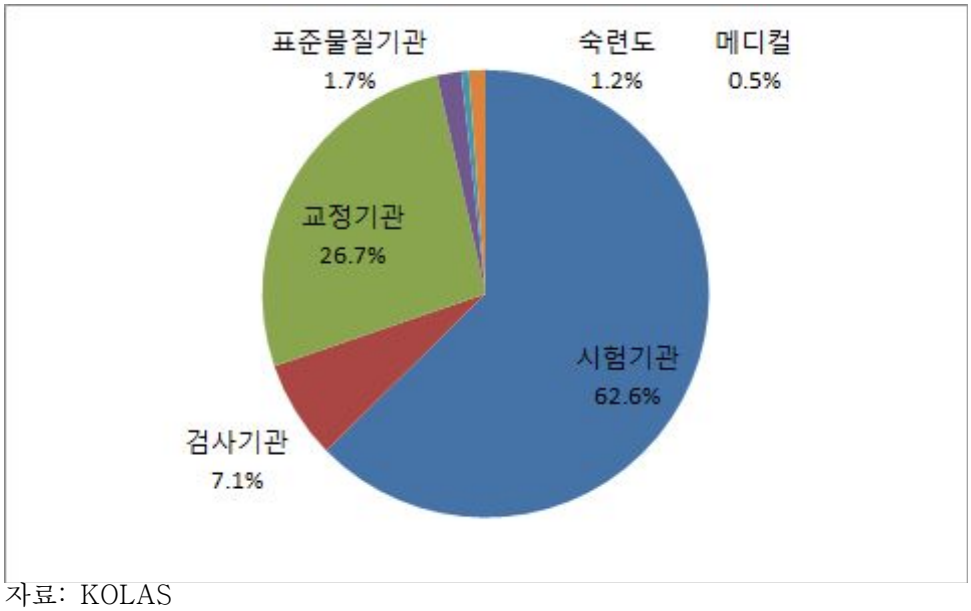

자료: KOLAS

○ 2014년 현재 468개 KOLAS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KOLAS)가 70여개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음(국가 인정기구 거버넌스 개편(안), 2014.12.30.)

- 시험분야(KOLAS)는 20년간 전기전자, 환경, IT 등 전 산업분야를 커버하여 국내기업에게 공인시험 인프라를 제공함.

□ KAS

○ KAS는 제품 인증기관 인정을 위해 2001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2007년 IAF-MLA, PAC-MLA 체결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해 옴.

○ 국제기준(ISO Guide 65) 및 IAF 지침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KAS 인정을 받은 제품인증기관 수는 2015년 8월 현재 에너지관리공단 등 20개 기관임.

- 이는 전기·섬유분야 제품인증을 필두로 IT제품까지 인증 가능한 품목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기준인 ISO 17065(인증기관 요구사항) 절차를 적용한 제품인증에 대한 관심 증대에 기인함.

<표 Ⅳ-6> KAS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인증기관 수

단위: 개,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2010~2015)
제품인증기관	13	15	16	17	20	20	11.3

자료: KAS

□ KAB

○ KAB은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제도에 대한 정부의 민간 운영 방침에 따라 1995년 9월에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민간 법인으로 품질 및 환경 분야를 포함한 경영시스템 인증분야의 인정기구 (Accreditation Body)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자격인증분야의 인정업무는 2005년 5월 (사)한국심사자격인증원(KAR)으로 이양함.

○ 2014년 기준 KAB의 인정을 받은 품질경영체제(QMS)기관 45개, 환경경영시스템(EMS)기관 40개, 총 85개로 2010~2015년 동안 연평균 6.5%씩 증가함.

- 국내외 QMS 및 EMS 인증기관 수는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나, 2012년 이후 외국계 인증기관의 국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이 증가함.

<표 Ⅳ-7> KAB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영체제 인증기관 수(2015년 8월 말 현재)

단위: 개,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2010~2015)
품질경영체제(QMS)	33	33	37	42	43	45	6.4
환경경영체제(EMS)	29	29	33	37	39	40	6.6
계	62	62	70	79	82	85	6.5

자료: KAB

(2) 지정제도에서의 인정 활용 현황

○ 인정제도와 지정제도는 서로 성격이 다르고 지정제도에서의 인정 활용은 선택적인 사항이고, 정부 부처 지정제도에서 인정기구 활용과 단일인정기구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보기 어려움.

○ 그러나 다른 국가 사례에서 보았듯이 최근 지정제도 규제활동의 일관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지정제도에서의 인정제도 활용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인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지정제도의 인정제도 활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정제도에서 인정제도 수용은 국내 3개 인정기구 중 주로 KOLA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정제도에서 인정기구 수용 여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정제도(적합성 평가제도)의 근거 법령에서의 인정기구 수용 현황과 실제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KOLAS 인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음.

- 근거 법령에서의 인정기구 수용은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활용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적격성에 KOLAS 인정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함[18].

○ 지정제도에서 KOLAS 기관 수용은 기관 지정시 KOLAS 인정 여부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거나 KOLAS 인정을 받은 기관에서 지정기관을 성택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방식과 특정 부처에서 지정을 받은 기관이 KOLAS 인정을 받은 소극적인 경우가 있음.

<표 Ⅳ-10> 부처별 지정제도의 KOLAS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용 사례

구분	사례	법령
KOLAS기관을 필수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한 사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국토교통부)	제208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 등 대행기관 지정검사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제205조의2에 따라 용기·포장검사를 할 수 있는 위험물검사 등 대행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18) 지정제도의 인정기구 활용과 관련하여 국가표준기본법의 불명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단일인정기구를 운영·활용 중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인정행위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함.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어야 한다.
KOLAS기관을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주는 사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27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② 검역검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2.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
KOLAS기관 중 해당 부처에서 지정하는 사례	담배사업법 시행령(기획재정부)	제9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구로 지정된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담배연기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부처 지정기관에 KOLAS기관이 포함된 사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	제29조(시험·분석기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활용한 제품·시설물 등의 성분, 순환골재의 품질 등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 6.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7.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설폐기물 또는 순환골재를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 지정제도 운영에서 KOLAS 인정을 받은 기관의 활용을 규정한 법령은 전체 17개 부처 90개 지정제도 관련 법령 중 담배사업법시행령’ 등 11개 부처 40개 법령으로 44.4%의 법령이 KOLAS 인정을 받은 기관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음.

– 미활용 법령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등 13개 부처 50개 법령임.

○ 지정제도 근거법령의 KOLAS 인정의 활용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부처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으로, 이러한 현상이 KOLAS 인정분야 한계에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포 Ⅳ-9> KOLAS 인정 반영 지정제도(법령)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체법령	활용	미활용	활용비율
총리실	2	0	2	0.0
재정부	1	1	0	100.0
미래부	1	0	1	0.0
교육부	1	0	1	0.0
안행부	3	2	1	66.7
문체부	2	0	2	0.0
농축산부	11	1	10	9.1
산업부	13	11	2	84.6
보복부	8	2	6	25.0
환경부	19	13	6	68.4
노동부	2	1	1	50.0
국토부	21	5	16	23.8
공정위	1	1	0	100.0
원안위	1	0	1	0.0
조달청	2	1	1	50.0
소방청	1	1	0	100.0
기상청	1	1	0	100.0
계	90	40	50	44.4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e-나라표준인증 웹사이트)에 등록된 209개 정부 지정제도(인증제도)에 참여한 기관들 중 식별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KOLAS, KAS, KAB 인정 현황을 보면 <표 >과 같음.

<표> 209개 정부 지정제도에서의 인정받은 기관 현황

단위: 개, %

		KOLAS		KAS		KAB	
	전체 기관 수	기관수	비중	기관수	비중	기관수	비중
시험검사기관	324	165	50.9	7	2.2	103	31.8
인증기관	522	63	12.1	17	3.3	25	4.8

자료: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 이들 지정제도에서의 인정의 활용은 시험검사기관은 50.9%가 KOLAS의 인정을 받은 기관이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그 다음은 KAB 인정으로 31.8%가 받은 기관으로 나타남.

○ 이는 지정제도에서 인정기구 활용은 KOLA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KOLAS 인정을 받은 기관 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관련 법령에서 KOLAS 활용을 의무화한데서 기인함.

○ 그러나 인증기관의 인정기구의 활용은 KOLAS가 12.1%로 나타났을 뿐 나머지 KAS나 KAB의 인정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부처별 지정제도 관련 적합성 평가기관의 산업부 인정기구로부터의 인정 현황을 보면 미래부와 환경부는 각각 75.0%와 68.4%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식약처의 경우 분야별로 12.5%~50%로 미래부나 환경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고 분야별 격차가 심함.

<표 Ⅳ-11> 타 부처의 인정기구 수용 현황

단위: 개, %

지정시험기관	분야	기관수	산업부 인정기구 인정을 받은 기관			비중
			KOLAS 인정	KAB 인정	소계	
미래부(국립전파연구원)	전자기파 지정시험기관	40	30	-	30	75.0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기관	19	2	11	13	68.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14	6	-	6	42.9
	한약재	8	1	-	1	12.5
	화장품	13	8	-	8	61.5
	의약품 품질	4	2	-	2	50.0
	식품	15	5	-	5	33.3
	축산물	33	10	-	10	30.3
	국외시험검사	63	-	-	-	-

	소계	150	32	0	32	21.3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 이처럼 지정제도의 지정을 받은 시험인증기관의 인정기구 활용 현황은 향후 지정제도에서 인정기구 활용 확대를 통해 관련 제도간 또는 제도 내 일관성이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시사함.

4. 인정제도의 경쟁력 분석

○ 인정제도의 경쟁력 분석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함.

- 첫째, 인정제도 측면 경쟁력 측정(단일인정제도와 복수인정제도)

- 둘째, 기존 인정기구의 경쟁력문제(산업부 3개 인정기관, 정부 부처)

□ 인정제도 측면 경쟁력 측정

○ 인정제도 측면의 경우 단일인정제도와 복수인정제도의 장단점문제로부터 접근이 가능함.

○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단일인정제도로 가는 추세라는 점은 현상을 의미할 뿐 실제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님.

○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서 단일인정제도를 취하는 국가가 복수인정제도를 채택한 국가에 비해 국가 전체의 품질인프라 수준이나 국제적인 시험인증경쟁력이 높다는 것으로 보여주어야 함.

- 인정제도는 국가 품질 인프라의 '최후의 보루' 기능을 하고, 한 국가 품질인프라는 적합성평가체제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시험인증산업 경쟁력으로 표출된다는 전제하에 시험인증산업 경쟁력으로 인정제도 경쟁력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문제는 한 국가의 품질인프라나 시험인증의 국제경쟁력이 인정제도 외에 다른 요인(산업발전단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력 측정, 특징 품질인프라 경쟁력 측정은 사실상 불가능함.

○ 또한 시험인증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인정의 경쟁력으로 바로 대체할 수 있는가 문제가 대두됨.

- 시험인증의 경쟁력문제가 인정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경우라도 현재의 복수인정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내부적인 비효율성이나 산업 발전과 같은 외부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가 문제가 대두됨.

- 단일인정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도 시험인증산업 경쟁력에서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는 단일인정제도를 채택하더라도 효율적인 운영 등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시험인증 경쟁력 확보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

- 따라서 단일인정제도로 나아갈 경우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필요한 운영조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인정기구와 시험인증기관의 경쟁력 강화, 국내대응문제, 현재 시험인증이나 인정이 가지는 문제 해소 등)

○ 이와 함께 시험인증산업의 국제경쟁력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시험인증산업 국제경쟁력 측정문제가 대두됨.

○ 이처럼 인정제도의 경쟁력을 직접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단일인정제도와 복수인정제도간 원론적인 장단점 비교분석에 그칠 우려가 있음.

□ 인정기구의 경쟁력 측정

○ 기존 인정과 지정제도로 인해 국내 인정기구의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이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단일인정제도로 나아가야한다는 측면임.

○ 현재 국내 3개 인정기구의 경우 해외 인정기구에 비해 규모, MLA/MRA 체결분야, 전체 시험인증기관 중 인정받은 기관 비중, 시험성적서 국제통

용, 인정기구 인증을 받은 기관의 전체 해외시험성적서 발행건수 대비 해외시험성적서 발행건수 등으로 측정이 가능함.

- 전체 시험인증기관 중 인정받은 기관 비중은 인정기구의 마케팅 능력 등을 보여줌.

□ 인정기구의 규모

○ 앞서 인정규모에서 보았듯이 국내 인정기구는 영국이나 독일의 인정기구에 비해 예산규모나 인원수가 작음.

○ 인정기구의 인정규모를 보면, 우리나라는 예산기준 영국의 13.6%, 독일의 20% 수준임.

<표 Ⅳ-4> 한국과 주요국의 인정규모 비교(예산 기준)

단위: 억원, 명

인정기구	한국(KOLAS/ KAS/KAB)	영국(UKAS)	독일(DAkkS)	호주(NATA)	대만(TAF)
예산	49	361	245	239	60
인원	38	180	144	200	55
인원당 예산	1.3	2.0	1.7	1.2	1.1

주: 한국 예산은 1015년, 영국, 독일은 2013년, 호주는 2014년, 대만은 2011년

○ 이러한 영세성이 부처별로 분산된 인정시스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는가 여부는 불명확한 측면이 존재함.

○ 그렇지만, 지정제도에 참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들이 부처의 지정제도에서 요구하는 요건 충복에만 치중하도록 함으로써 인정기구의 활성화를 제약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 규모의 영세성은 국제적인 대응이나 업무의 전문성 또는 관리인원문제 등으로 인해 인정을 부여한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관련 기준 적용, 감독관리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적정한 규모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함.

<표 Ⅳ-16> 주요국의 인정기구 비교

인정기구	한국(KOLAS/KAS/KAB)	영국(UKAS)	독일(DAkkS)	중국(CNAS)	호주(NATA)
기관 명칭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rea Accreditation System/Korea Accreditation Board	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 GmbH	China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for Conformity Assessment	National Association of Testing Authorities
설립년도	1992년/2001년/1995년	1995년	2009년	2007년	1947년
기관형태	정부/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기관특성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 - 정부조직법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에 근거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정부조직 - KAB은 민법에 의거 설립되어 품공법 및 환친법에 근거 인정기구로 지정	- 인증기관국가인정협의회(NACCB)와 국가측정인정서비스(NMAS) 합병을 통해 설립 - 인정규정(2009) 및 기업혁신국무부(BIS)와의 MoU 하에 국가단일인정기구로 활동	- 기존 6개의 인정기구를 통합하여 설립 -인정기구법(2009)에 의거 국가단일인정기구로 활동	- 중국 국무원 소속 CNCA(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가 부처별로 운영되던 8개 인정기구를 CNAS로 통합 - 중국인정인증조례(2003)에 의거 국가단일인정기구로 활동	- 호주연방정부에 의해 설립 - 해당 권한은 연방정부와의 MoU에 의거하여 기술
예산	49억(2015년)	361억(2013년)	245억(2013년)		239억(2014년)
인원	38명(KAB 포함) (KOLAS 14명)	180명	144명	220명	200명

인정기구	대만(TAF)	미국(A2LA)	미국(NVLAP)
기관 명칭	Taiwan Accreditation Foundation	American Association for Lab Accreditation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설립년도	2003년	1978년	1976년
기관형태	민간	민간	정부
기관특성	- 시험, 교정 분야 정부인정기구인 CNLA(1990)와 인증 분야 민간인정기구인 CNAB(1997)가 통합하여 설립	- 미연방세법(U.S. Internal Revenue Code)에 의거하여 설립 (501(c)(3)항) - 일부 인정범위 업무에 대해 **주/연방 정부기관에 의한 승인** 하에 지정되어 활동을 수행	- 미연방관보(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5조 7항에 의거, **미상공부**에 의해 설립
예산	60억(2011년)	161억(2014년)	54억(2006년)
인원	55명	59명	22명

□ MLA/MRA 체결분야

○ 국제인정기구와의 MLA/MRA 체결 현황은 인정기구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항목으로 국내인정기구의 경우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체결분야가 제한적임(ILAC과 IAF 체결 세부 분야는 <부표> 참조)

<표 Ⅳ-17> 주요국의 인정기구의 MRA/MLA 현황 비교

인정기구	한국(KOLAS/KAS/KAB)	영국(UKAS)	독일(DAkkS)	중국(CNAS)	호주(NATA)
MRA/MLA 가입분야& 시기	1) APLAC/PAC - 시험: 1998.9. - 교정: 1998.9. - 제품: 2007.7. - QMS: 1999.7. - EMS: 2004.7. 2) ILAC/IAE - 시험: 2000.11. - 교정: 2001.6. - 제품: 2007.10. - QMS: 1999.9. - EMS: 2004.10.	1) EA - 교정: 1989.12 - 시험: 1992.5 - 검사: 2003.10 - Product: 1994.12 - QMS/EMS: 1994.11 - 요원인증: 1998.6 2) ILAC/IAF -시험/교정: 2000.11 - 검사: 2012.10 - QMS: 1998.1 - EMS: 2004.10 - Product: 2004.10	1) EA - 교정: - 시험: - 검사: - Product: - QMS: - EMS: 2) ILAC/IAF -시험/교정: 2000.11 - 검사: 2012.10 - QMS: 1998.1 - EMS: 2004.10 - Product: 2004.10	1) APLAC/PAC - 교정: 1999.12 - 시험: 1999.12 - 검사: 2004.12 - Product: 2008.6 - QMS: 1998.1 - EMS: 2004.7 2) ILAC/IAF -시험/교정: 2000.11 - 검사: 2012.10 - QMS: 1998. 1 - EMS: 2004.10 - Product: 2008.10	1) APLAC -시험/교정: 1997.11 - 검사: 2003.11 - RMP: 2007.12 2) ILAC -시험/교정: 2000.11

인정기구	대만(TAF)	미국(A2LA)	미국(NVLAP)
MRA/MLA 가입분야& 시기	1) APLAC/PAC - 교정: 1997 - 시험: 1997 - 검사: 1997 - Product: 2007.7 - QMS: 2002.8 - EMS: 2004.7 2) ILAC/IAF -시험/교정: 2000.11 - 검사: 2012.10 - QMS: 2004.10 - EMS: 2011.7 - Product: 2011.7	1) APLAC -시험/교정: 1997.11 -검사: 2006. 9 -RMP : 2007. 12 - ISO 15189: 2010.5 2) ILAC -시험/교정: 2000.11	1) APLAC -시험/교정: 1997.11 2) ILAC -시험/교정: 2000.11

□ 인정받은 기관

○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관 수는 기관의 마케팅 능력 등 경쟁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국내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수는 선진국은 물론 중국, 대만 등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임.

<표 Ⅳ-18> 주요국의 인정기구의 인정 현황 비교

인정기구		한 국 (KOLAS /KAS/K AB)	영 국 (UKAS)	독일(D AkkS)	중국(C NAS)	대만(T AF)	미국(A 2LA)	미국(N VLAP)	호 주 ㅇ (NATA)
운영제도 및 분야별 인정현황 (단위: 개)	전체	816	2,218	3,857	7,155	1,733	2,789	806	3292
	시험	478	1,159	2,245	5,547	1,181	1,985	689	2135
	교정	206	321	458	768	214	669	117	223
	검사	53	356	246	384	24	48		162
	RMP	13	11	8	11	2	25		16
	PT운영기관	7	21	17	36	10	31		13
	ISO 15189	4	38	427	184	221	8		712
	인증(제품)	23	116	213	40	47	23		
	인증(QMS)	42	96	127	96	15			
	인증(EMS)	38	66	67	88	7			
	인증(요원)	2	22	49	1	2			
	검증(GHG)		12	19		10			
	R&D								10
	GLP								21
	기타		※그외, 자격인증 ,ISO151 95,법과학시험 등을 운영						※그외, 건설시료시험 기관,법과학,정보통신 기술인정등을 운영
운영요령 보유현황 (단위: 종)	전체	40	89				123	32	90
	운영요령	10	4				13	23	1
	추가기술요건	13	50				28		32
	해설(지침)서	17	20				10		23
	(기술)정책지침		15				16		
	기술지침서							9	10
	평가점검표								6
	기타		* 운영프로그램 별로문				일반정보문서: 18 -		일반정보문서: 3 -

			서구성되어정확한구분에의한문서통계는아님				일반정보문서: 18		시험분류체계: 15
소요비용(천원)	신청	50,000원	£1,500(2,600천원)	€1.500(2,000천원)	￥500(90천원)	)NT$60,000(2,000천원)	$800(950천원)	$750(900천원)	AUD2,336(2,498천원)
	평가	24,990원/일	£1,030(1,800천원/일)	€1,000(1,30천원/일)	￥2,500(450천원/일)	TNT$10,000(360천원/일)	$1,200(1,424천원/8시간)	$1,600~$6,120(일)(1,899~7,264천원)	AUD230(245천원/시)
	연회비	없음	£2,200(4,000천원)	€1.200(4,000천원)	매출액의 1%	NT$480,000(17,000천원)	$1,300(1,543천원)	$4,930~$5,430(5,851~6,445천원)	AUD3,960~6,145(4,234~6,571천원)
	기타	* 여비별도 KAB 1) 3,000천원 2) 800천원/일 3) 매출의 2%	* 여비별도	* 여비별도	* 여비별도	* 여비별도	* 여비별도 * 분야 및 기관수별로 연회비상이		* 여비별도 * 인정분야별로 평가비용상이 * 거리/기관수별로연회비상이
PT 주기		- 중분류별로 3년에 1회 이상 참가	- 특별히 주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으나, EA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				-1년에 2회 이상 참여(4개 이하의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을시, 1년에 1회 이상 참여)	- 중분류별로 4년에 1회 이상 참가	- 대분류별로 2년에 1회 이상 참가
		- 메티칼 시험기관(ISO 15189:2007)은 중	-EA: 중분류별 4년에 1회 이상 참가						- 시험별로 빈도는 다를 수 있음

	분류별로 1년에 2회 이상							
평가사 보유현황	- 736명	- 800명		- 5,046명		- 178명	- 129명 (2008년)	-3,000명

○ 그러나 이러한 인정받은 기관의 절대 규모는 해당 국가의 시험인증산업 발전정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당 국가 전체 시험인증 기관수에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통계 비교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국가 전체 시험기관에서 해당 국가 인정기구로부터 시험소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비중을 측정함.

○ 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인정받은 시험소 비율이 14.7%로 선진국인 독일이나 영국은 물론 중국이나 홍콩에 비해서도 크게 뒤쳐진 것으로 나타남.

<표 Ⅳ-19> 전체 시험인증기관 중 인정받은 시험인증기관 비중

단위: 개, %

	전체 시험기관(2013)	인정받은 시험기관(2015년)	인정받은 시험소 비율
영국	4,610	1,598	34.7
중국	14,940	6,472	43.3
독일	2,445	2,249	92.0
홍콩	610	221	36.2
한국	3,174	466	14.7

자료: 한국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영국과 독일은 Eurostat, 중국은 Euromonitor International, 홍콩은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 국제활동

○ 3개 인정기구를 운영하고 개별 인정기구의 규모가 영세함에 따라 전문성 및 국제대응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짐.

- 특히 국제평가사에서 우리나라는 2명으로 다른 비교대상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표 Ⅳ-20> 주요국의 인정기구의 인정 현황 비교

인정기구		한국(KOLAS/KAS/KAB)	영국(UKAS)	미국(A2LA)	미국(NVLAP)	호주(NATA)
주요 국제활동	국제기구 임원진 활동	- APLAC 지명위원회 위원 및 SWWG 의장 수임	- EA 부의장 및 ILAC 홍보위원회 의장 수임 - ILAC RMP WG 의장	- APLAC TMB 위원 및 TC 의장수임 - ILAC 부의장 수임 -ILAC/IAF A시리즈 작업반 의장수임	- IAAC 시험기관위원회 부의장 수임	- ILAC/APLAC 사무국 지원 및 APLAC 사무국장 수임 - APLAC TMB 위원 및 ILAC 인정사안위원회 의장수임
	국제평가사 보유	- 2명		- 7명	- 6명	- 11명

5. 인정제도의 과제

○ 이상의 국내 인정제도와 관련한 현황 분석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인정제도가 가지는 과제는 단일인정체제로의 개편 필요성, 인정기구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정제도의 인정기구 활용 강화로 구분할 수 있음.

(1) 인정거버넌스 체제 재정비 필요

○ 국내 3개 인정기구의 경우 3개의 상이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 등 다른 국가의 동일 분야에 대한 복수인정기구 허용에 따른 중복 인정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3개 인정기구를 운영함에 따라 개별 인정기구가 다른 국가의 인정기구에 비해 규모나 예산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국내 3개 인정기구의 경우 모두 합할 경우도 선진국은 물론 대만 등에 비해서도 소규모임.

○ 향후 부처별로 독자적 국제인정기구 가입과 인정기구 설립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인정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인정기구의 영세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국제대응 능력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국내 복수인정기구의 경우 국제적인 인정환경 변화나 국제인정기구 활동에 대한 대응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실제 우리나라 인정기구의 국제인증기구에 대한 대응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국제 인정기구에 대한 대응 취약은 인정기구의 국제적 브랜드와도 연계되는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만약 최근 국가별 1국가 1인정기구 추세에 역행하여 부처별 독자적인 인정기구 설립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인정기구의 대표성이나 국제 브랜드는 하락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영세한 인정기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국제 인정환경 변화나 국제인정기구 활동에 대응할 수밖에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고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음.

- 이밖에 실무적인 문제로 국제인정기구의 경우 1국가 1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인정기구가 참여할 경우 컨트롤 타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정부 복수 인정기구는 전 세계에서 태국 1개국만 존재).

○ 이러한 영세성은 국내 인정기구의 인정기구로서의 위상은 물론 국제 브랜드 구축 등 전체적인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정기구의 영세성으로 인한 대표성 취약은 정부 부처의 개별적인 인정기구 설립이나 지정제도 운용에서 인정기구와의 연계 미흡 등의 문제를 초래한 측면이 있음.

○ 해외 국가들이 단일인정기구를 도입한 이유 중 하나는 단일인정기구 도입에 따른 브랜드 경쟁력 강화임.

- FTA, TBT 등 통상 협상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기업의 혼선 방지를 위해 단일인정마크의 국가브랜드화가 필요함.

- 홍콩의 경우 3개의 인정스킴을 단일인정기구에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운영효율성 제고 외에 이러한 인정기구의 브랜드 구축 등의 측면

이 감안된 것으로 보임.

○ 복수인정기구로 인한 영세성 문제가 가져올 수 있는 또 한가지 문제점은 적절한 평가나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정의 품질 하락문제임.

- 인정은 국가 품질인프라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의 품질 하락은 적하벙 평가의 품질 하락, 더 나아가 국가 전체 품질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인정기구의 위상 강화나 인정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3개 인정기구를 통합하여 단일인정기구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음.

- 단일인정기구 설립을 통해 전 세계가 한국의 시험·검사성적서, 제품인증서 등을 혼선 없이 식별하여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인정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

○ 인정기구의 경쟁력 분석에서 보았듯이 인정기구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임.

- 인정기구의 국제경쟁력은 인정기구 종사자 당 인정규모(수입액 또는 매출액), 국제인정기구와의 MLA/MRA 체결분야, 전체 적합성 평가기관 중 인정받은 기관의 비율, 국제인정기구에서 활동이나 전문인력 보유 등 주요 경쟁력 지표에서 모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국제경쟁력 취약 문제는 인력과 마케팅,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인정기구의 통합이나 규모 확대를 통해서 단시간 내에 달성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인정기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정부 지정제도에서의 인정기구 활용 강화

○ 복수인정기구 운영은 제도 운영은 부처별 복수 인정기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시험·인증기관 등 수요자는 다수기구로부터 중복규제를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문제는 기존 인정기구를 통합하여 단일인정기구를 설립하더라도 지정제도에서 인정기구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인정과 지정간 중복문제를 피할 수 없음.

- 복수인정기구를 유지하거나 새로이 인정기구를 추가할 경우 일부 분야별 인정 관련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시험인증기관의 비용 및 관리 부담으로 이어짐으로서 적합성 평기기관에 대해서는 최근 중복인증문제와 유사한 중복인정문제로 발전할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관성 있고, 투명한 규제제도 구축을 위해 규제활동에서의 적합성 평가시스템 활용이 증대하고 있음.

○ 따라서 인정과 지정의 중복문제 회피라는 소극적인 측면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제정제도 운용에서 인정기구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인정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부처간 공통 인정분야, 즉 업무영역이 겹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처 공동인정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정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인정기구의 위상과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Ⅴ. 국내 인정제도 경쟁력 강화 방안

1. 개관

○ 우리나라 인정제도는 기업의 수출경쟁력과 국내 적합성 평가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구축과 인정기구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복수인정제도 개편 필요, 인정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부 지정제도에서의 인정기구 활용 강화라는 과제 해소가 필요함.

○ 인정기구 개편은 기존 인정기구 통합을 통한 단일인정기구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인정제도 프레임워크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문제에는 정부가 인정을 활성화시켜야 하는지, 활성화 시키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활성화 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부 또는 민간기관을 활용해야 하는지의 여부임.

○ 인정기구의 경쟁력 강화나 정부 부처 지정제도에서 인정기구 활용 활성화는 단일인정기구가 범부처 적합성 평가 최정점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강함.

- 인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인정과 정부 지정제도간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점임. 이는 특히 정부가 규제 분야에서 승인이나 지정을 위해 인정을 사용한다는 사실과도 관련됨.

2. 국내 인정제도 경쟁력 강화방안

(1) 인정거버넌스체제 정비

□ 단일인정기구 설립

○ 인정거버넌스체제 정비는 국내 인정시장 규모와 기존 인정기구의 국제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각간 인정 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인정시장의 한계, 기존 인정기구의 영세성과 낮은 국제경쟁력 그리고 국제적인 1 국가 1 인정기구 설립을 통한 인정경쟁력 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단일인정기구 설립을 통해 인정기구의 국제 브랜드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정기구는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부처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부처별 새로운 인정기구 설립 등을 통한 복수인정기구 유지는 인정기구의 영세성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3개 인정기구(KOLAS, KAS, KAB) 통합을 통해 단일인정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시급함.

○ 이를 위해서는 인정기구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표 Ⅴ-1> 국가표준기본법과 시행령의 인정기구 관련 규정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시험·검사기관 인정)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6조 (시험·검사기관의 인정)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표준원을 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즉, 1국가 1인정기구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고, 인정기구 신설 논란에 따른 반복적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표 Ⅴ-2> 국가표준기본법의 인정기구 관련 규정 개정(안)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운영과 적합성평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하여 **하나의 인정체제를 갖추며**, 이에 따른 **단일인정기구**(이하 "한국인정기구"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둔다

□ 인정관련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 단일인정기구의 국가 대표 인정기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단일인정기구의 부처 인정수요 원활한 처리를 위해 단일인정기구 내에 범부처 인정관련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 인정관련 업무 조정과 개별 인정업무의 심의 등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 등 조직 구성과 함께 분야별 인정업무 수행에 관련 부처가 참여할 수 있는 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동일 인정분야라 하더라도 인정업무에서 부처간 업무가 중복되고 전문성에서 다소 상이한 ICT, 메디컬, 식품, 환경 등의 분야에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함.

○ 한편, 단일인정기구 내에서 부처 참여를 인정할 경우, 예를 들어 피인정기관 평가 등 인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부처의 자율성과 인정기구의 인정기구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의 투명성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정활동에 대한 부처간 동등성 평가나 제3자에 의한 인정업무 평가(인정받은 기관의 시험인증활동 포함) 등 사후관리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인정기구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단일인정기구 도입이 이루어지더라도 국가 위상에 걸맞는 인정기구 구축과 인정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정기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통합인정기구 조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인정기구의 대형화를 포함하여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부처 지정제도에서의 인정기구 활용 활성화

○ 인정기구는 국제적인 요구사항(국제 표준)에 기반하여 적합성 평가기관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있음.

○ 이러한 인정기구의 적합성 평가기관 적격성 평가는 지정제도, 즉 적합성 평가틀을 활용한 정부 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 제고 그리고 관련 공공서비스의 품질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지정제도를 통한 지정제도로 나타나는 정부 규제에서 인정기구의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도 부처별 또는 부처간 지정제도 운영에서 일관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지정제도 운영에 있어서 인정기구의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 개별 부처별 소관 지정제도(규제제도)의 뿐만 아니라 범부처 지정제도(규제제도)의 일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정기구 활용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 지정제도에 참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 즉 시험, 인증, 검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 지정시 국제표준에 기반에 기반하여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공통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범부처 지정제도에 참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시 해당 적합성 평가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인정기구를 통한 평가 권고 또는 의무화 그리고 지정 전에 이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정기구의 적격성 평가와 지정제도 적격성 평가간 일부 중복되는 평가절차 면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범부처 지정제도에 참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인정기구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범부처 차원에서 지정제도에 참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이나 검사를 받은 기관에 대한 적합성 평가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대해 제3자 기관인 인정기구를 통한 평가를 통해 지정제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부표> 국가별 ILAC, IAF MLA 현황

IAF					국가	ILAC 2015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 ISO/IEC 17021	Product certification – ISO/IEC Guide 65	LEVEL4	LEVEL5	인정기구		인정기구	Testing: ISO/IEC 17025	Testing: ISO 15189	Calibration: ISO/IEC 17025	Inspection: ISO/IEC 17020
not yet admitted	not yet admitted	not yet admitted	not yet admitted	DirectorateofAccreditation(DA)	ALBANIA					
●	●	●	●	Organismo Argentino de Acreditacion (OAA)	ARGENTINA	Organismo Argentino de Acreditacion (OAA)	●	●	●	●

●	●	●	●	Joint Accreditation System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JAS-ANZ)	AUSTRALIA & NEW ZEALAND	Joint Accreditation System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JAS-ANZ)				●
					AUSTRALIA	National Association of Testing Authorities, Australia (NATA)	●		●	●
●	●	●	●	Akkreditierung Austria (Akkreditierung)	AUSTRIA	Akkreditierung Austria (Akkreditierung)	●	●	●	●
					BANGLADESH	Bangladesh Accreditation Board (BAB)	●		●	
●	●	●	●	Belgian Accreditation Structure (BELAC)	BELGIUM	Belgian Accreditation Structure (BELAC)	●	●	●	●
					BOSNIA and HERZEGOVINA	Institute for Accreditation of Bosnia and Herzegovina (BATA)	●		●	●
●	●	●	●	Coordenacao Geral de Acreditacao, General Coordination for Accreditation (CGCRE)	BRAZIL	Coordenacao Geral de Acreditacao, General Coordination for Accreditation (CGCRE)	●	●	●	●
●	●		●	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	CANADA	Canadi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Inc. (CALA)	●			
						Institute for Quality Management in Healthcare (IQMH)		●		
						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	●	●	●	
●			●	Instituto Nacional De Normalizacion (INN)	CHILE	Instituto Nacional De Normalizacion (INN)	●	●	●	
●	●	●	●	China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for Conformity Assessment (CNAS)	CHINA, People's Republic of	China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for Conformity Assessment (CNAS)	●	●	●	●
●	●		●	Taiwan Accreditation Foundation (TAF)	CHINESE TAIPEI	Taiwan Accreditation Foundation (TAF)	●	●	●	●

				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on de Colombia (ONAC)	COLOMBIA	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on de Colombia (ONAC)	●		●	
●	●		●	Ente Costarricense de Acreditacion (ECA)	COSTA RICA	Ente Costarricense de Acreditacion (ECA)	●		●	●
					CROATIA	Croatian Accreditation Agency (HAA)	●	●	●	●
					CUBA	National Accreditation Body of Republica de Cuba (ONARC)	●		●	
					CYPRUS	Cyprus Organisation for the Promotion of Quality (CYS) – Cyprus Accreditation Body (CYSAB)	●	●	●	●
●	●	●	●	Czech Accreditation Institute (CAI)	CZECH REPUBLIC	Czech Accreditation Institute (CAI)	●	●	●	●
●	●	●	●	Danish Accreditation Fund (DANAK)	DENMARK	Danish Accreditation Fund (DANAK)	●	●	●	●
●	●		●	Servicio de Acreditación Ecuatoriano (SAE)	ECUADOR	Servicio de Acreditación Ecuatoriano (SAE)	●		●	●
●			●	Egyptian Accreditation Council (EGAC)	EGYPT	Egyptian Accreditation Council (EGAC)	●	●	●	●
					EL SALVADOR	Organismo Salvadoreño de Acreditación (OSA)	●			
●	●		●	Finnish Accreditation Service (FINAS)	FINLAND	Finnish Accreditation Service (FINAS)	●	●	●	●
●	●	●	●	Comite Francais d'Accreditation (COFRAC)	FRANCE	Comite Francais d'Accreditation (COFRAC)	●	●	●	●
				GulfCooperation CouncilAccreditationCenter (GAC)	GCC Economics					
●	●	●	●	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 GmbH (DAkkS)	GERMANY	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 GmbH (DAkkS)	●	●	●	●
●	●	●	●	Hellenic Accreditation System S.A. (ESYD)	GREECE	Hellenic Accreditation System S.A. (ESYD)	●	●	●	●

					GUATEMALA	Oficina Guatemalteca de Acreditacion (OGA)	●	●	●	●
●	●		●	Hong Kong Accreditation Service (HKAS)	HONG KONG, CHINA	Hong Kong Accreditation Service (HKAS)	●	●	●	●
●	●		●	Hungarian Accreditation Board (NAT)	HUNGARY	Hungarian Accreditation Board (NAT)	●	●	●	●
●	●	●	●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Certification Bodies (NABCB)	INDIA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Certification Bodies (NABCB)				●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Testing & Calibration Laboratories (NABL)	●	●	●	
●	●		●	National Accreditation Body of Indonesia (KAN)	INDONESIA	National Accreditation Body of Indonesia (KAN)	●	●	●	●
				NationalAccreditationCenterofIran(NACI)	IRAN					
●	●	●	●	Irish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INAB)	IRELAND	Irish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INAB)	●	●	●	●
					ISRAEL	Israel Laboratory Accreditation Authority (ISRAC)	●	●	●	●
●	●	●	●	L'Ente Italiano di Accreditamento (ACCREDIA)	ITALY	L'Ente Italiano di Accreditamento (ACCREDIA)	●	●	●	●
					JAMAICA	Jamaica National Agency for Accreditation (JANAAC)	●			
not yet admitted	not yet admitted	not yet admitted	not yet admitted	JIPDEC	JAPAN	International Accreditation Japan (IAJapan)	●		●	
not yet admitted	not yet admitted	not yet admitted	not yet admitted	JapanAccreditationSystemforProductCertificationBodiesofJISMark (JASC)		Japan Accreditation Board (JAB)	●	●	●	●
	●			International Accreditation Japan (IAJapan)		Voluntary EMC Laboratory Accreditation Center INC (VLAC)	●			
●	●		●	Japan Accreditation Board (JAB)						

				Kenya Accreditation Service (KENAS)	KENYA					
	●			National Centre of Accreditation (NCA)	KAZAKHSTAN	National Centre of Accreditation (NCA)	●		●	
	●			KoreaAccreditationSystem(KAS)	KOREA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	●	
●			●	KoreaAccreditationBoard(KAB)						
not yet admitted	not yet admitted	not yet admitted	not yet admitted	KosovoAccreditationDirectorate(DAK)	KOSOVO					
					KYRGYZ REPUBLIC	The Kyrgyz Center of Accreditation (KCA)	●			
●	●		●	Office Luxembourgeois d'Accreditation et de Surveillance (OLAS)	LUXEMBOURG	Office Luxembourgeois d'Accreditation et de Surveillance (OLAS)	●	●	●	●
●	●		●	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Standard Malaysia)	MALAYSIA	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Standard Malaysia)	●	●	●	●
not yet admitted	not yet admitted	not yet admitted	not yet admitted	MauritiasAccreditationService(MAURITAS)	Mauritius					
●	●	●	●	entidad mexicana de acreditacion a.c. (ema)	MEXICO	entidad mexicana de acreditacion a.c. (ema)	●	●	●	●
					MONGOLIA	Mongolian Agenc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Accreditation Department (MNAS)	●		●	
●	●	●	●	Dutch Accreditation Council (RvA)	NETHERLANDS	Dutch Accreditation Council (RvA)	●	●	●	●
					NEW ZEALAND	International Accreditation New Zealand (IANZ)	●	●	●	●
					NICARAGUA	National Accreditation Office (ONA)	●			
●	●	●	●	Norsk Akkreditering (NA)	NORWAY	Norsk Akkreditering (NA)	●	●	●	●

●			●	Pakistan National Accreditation Council (PNAC)	PAKISTAN	Pakistan National Accreditation Council (PNAC)	●		●	
					PAPUA NEW GUINEA	Papua New Guin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PNGLAS)	●			
					PARAGUAY	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on de Colombia (ONAC)	●			
●	●		●	National Institute for Quality (INACAL)	PERU	National Institute for Quality (INACAL)	●		●	●
●			●	Philippine Accreditation Bureau (PAB)	PHILIPPINES	Philippine Accreditation Bureau (PAB)	●		●	
●	●		●	Polish Centre for Accreditation (PCA)	POLAND	Polish Centre for Accreditation (PCA)	●	●	●	●
●	●	●	●	Instituto Portugues de Acreditacao (IPAC)	PORTUGAL	Instituto Portugues de Acreditacao (IPAC)	●	●	●	●
●	●		●	Romanian Accreditation Association (RENAR)	ROMANIA	Romanian Accreditation Association (RENAR)	●	●	●	●
not yet admitted	not yet admitted	not yet admitted	not yet admitted	Scientific Technical Centre on Industrial Safety (STC-IS)	RUSSIAN FEDERATION	Association of Analytical Centers 'Analitica' (AAC 'Analitica')	●			
●	●		●	Accreditation Body of Serbia (ATS)	SERBIA	Accreditation Body of Serbia (ATS)	●	●	●	●
●	●		●	Singapore Accreditation Council (SAC)	SINGAPORE	Singapore Accreditation Council (SAC)	●	●	●	●
●	●	●	●	Slovak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SNAS)	SLOVAKIA	Slovak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SNAS)	●	●	●	●
●	●		●	Slovenian Accreditation (SA)	SLOVENIA	Slovenian Accreditation (SA)	●		●	●
●	●	●	●	South African National Accreditation System (SANAS)	SOUTH AFRICA	South African National Accreditation System (SANAS)	●	●	●	●
●	●	●	●	Entidad Nacional de Acreditacion (ENAC)	SPAIN	Entidad Nacional de Acreditacion (ENAC)	●	●	●	●

●	●		●	Sri Lanka Accreditation Board for Conformity Assessment (SLAB)	SRI LANKA	Sri Lanka Accreditation Board for Conformity Assessment (SLAB)	●	●	●	
●	●	●	●	Swedish Board for Accredit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SWEDAC)	SWEDEN	Swedish Board for Accredit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SWEDAC)	●	●	●	●
●	●	●	●	Swiss Accreditation Service (SAS)	SWITZERLAND	Swiss Accreditation Service (SAS)	●	●	●	
●	●		●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Council of Thailand – Office of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Council (NSC-ONSC)	THAILAND	Bureau of Laboratory Accreditation, Department of Science Service,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BLA-DSS)	●			
						The Bureau of Laboratory Quality Standards,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Ministry of Public Health, Thailand (BLQS-DMSc)	●	●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Council of Thailand – Office of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Council (NSC-ONSC)	●		●	●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he Accreditation Institute of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IARM)	●	●	●	●
●			●	Tunisian Accreditation Council (TUNAC)	TUNISIA	Tunisian Accreditation Council (TUNAC)	●		●	●
●	●	●	●	Turkish Accreditation Agency (TURKAK)	TURKEY	Turkish Accreditation Agency (TURKAK)	●	●	●	●

					UKRAINE	National Accreditation Agency of Ukraine (NAAU)	●		●	●
●			●	Dubai Accreditation Centre (DAC)	UNITED ARAB EMIRATES	Dubai Accreditation Centre (DAC)	●	●	●	●
●	●	●	●	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UKAS)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UKAS)	●	●	●	●
	●			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A2LA)	UNITED STATES OF AMERICA	AccreditationServicesBureau(A-S-B)dbaLaboratoryAccreditationBurear(L-A-B)	●		●	
						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A2LA)	●	●	●	●
●			●	ANSI-ASQ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ANAB)		AIHA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s, LLC (AIHA-LAP,LLC)	●			
						ANSI-ASQ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ANAB)	●		●	●
	●	●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American Society of Crime Lab Directors/Laboratory Accreditation Board (ASCLD/LAB)	●			
						Inter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Inc (IAS)	●		●	●
	●			Inter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Inc (IAS)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NVLAP)	●		●	
						Perry Johnson Laboratory Accreditation, Inc (PJLA)	●		●	
●	●		●	Organismo Uruguayo de Acreditacion (OUA)	URUGUAY	Organismo Uruguayo de Acreditacion (OUA)	●		●	
●	●		●	Bureau of Accreditation (BoA)	VIETNAM	Bureau of Accreditation (BoA)	●	●	●	●